

관세환급제도의 중소기업 활용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2020. 12

연구진

연구책임자

정 재 호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 재 선 관세사

목 차

I. 서론	7
II. 수출용 원재료 관세 등 환급제도 개요	10
1. 수출용 원재료 관세 등 환급의 의의	10
가. 관세환급의 의의	10
나. 관세환급의 목적	11
2. 수출용 원재료 관세 등 환급제도	13
가. 관세환급제도	13
나. 관세환급제도의 운용 현황	24
III. 주요국의 관세환급제도	32
1. 미국	32
가. 제조물품의 관세환급	32
나. 미사용 물품의 관세환급	41
2. 일본	44
가. 수출물품의 제조용 원료품의 감세, 면세 또는 환급	44
나. 수입 시와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되는 물품의 환급	51
3. 호주	52
가. 관세환급(Drawback)	52
나. 무역수출면세제도(Tradex Scheme)	56
4. 캐나다	59
가. 수입 및 수출물품 면세	59

나. 수입 및 수출물품 환급	63
5. 국제비교	66
IV. 중소기업의 관세환급제도 활용 제고	70
1. 중소기업의 관세환급제도 적용상 문제점	71
가. 납세협력비용의 부담	71
나. 규정의 복잡화	74
다. 간이징액환급의 과소환급	81
2. 중소기업 활용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83
가. 납세협력비용의 전가	83
나. 규정 및 제도의 정비	86
다. 관세당국의 협력	92
참고문헌	95

표 목차

〈표 II-1〉 간이정액환급률표 예시	19
〈표 II-2〉 최근 10년간 관세환급 실적	25
〈표 II-3〉 최근 10년간 관세징수액 대비 관세환급액	26
〈표 II-4〉 최근 5년간 수출 대비 관세환급 실적	26
〈표 II-5〉 최근 5년간 수출 대비 개별환급 실적	27
〈표 II-6〉 최근 5년간 수출 대비 간이정액환급 실적	28
〈표 II-7〉 최근 5년간 중소기업 환급활용률	29
〈표 II-8〉 최근 10년간 전체환급 대비 환급방법별 비중	30
〈표 II-9〉 최근 10년간 환급 건·업체당 환급금액	31
〈표 III-1〉 일본 수출물품의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세 대상	46
〈표 III-2〉 주요국의 환급제도 비교	69
〈표 IV-1〉 환급사용물량 제한 품목 수입신고필증 사용 사례	78
〈표 IV-2〉 환급사용물량 제한 품목 기납증 우선 사용 사례	79
〈표 IV-3〉 환급사용물량 제한 품목 국내공급 사례	80
〈표 IV-4〉 규정 개정 후 환급사용물량 제한 품목 수입신고필증 사용 사례(1)	89
〈표 IV-5〉 규정 개정 후 환급사용물량 제한 품목 수입신고필증 사용 사례(2)	90

그림 목차

[그림 III-1] 미국 일반제조환급 결정 예시	36
[그림 III-2] 미국 특정제조환급 결정 신청 양식 예시	39
[그림 IV-1] 환급사용물량 제한 품목 안분계산 사례	76
[그림 IV-2] 간이정액환급률표 특계호 및 기타호 환급금액 차이 예시	82
[그림 IV-3] 규정 개정 후 환급사용물량 제한 품목 안분계산 사례	88

I. 서론

-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이라는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출입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¹⁾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개발·보급하고, 품목분류 정보 및 무역통계 서비스를 제공함
 -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납기 연장, 분할납부 지원 등 수출입 중소기업에 세정지원을 강화함

-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제도와 관련하여 맞춤형 수출환급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²⁾
 - 일괄납부의 담보요건을 폐지하여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담보제공 없이 관세 등을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신용담보업체에 해당하지 않아 담보를 제공해 왔던 중소기업도 담보 없이 일괄납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 정보부족 등으로 수출환급을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수출기업에 환급신청을 안내하고 있음
 - 또한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환급제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있음
 - 자동환급이란 별도의 환급신청 없이 수출신고서에 자동환급 여부만 표시하면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함

1) 관세청, 「18년 국정과제 관련 주요정책과제 추진 실적 2」, 2018. 12, p. 2

2) 관세청 블로그,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2019. 7. 5,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578491074, 검색일자: 2021. 2. 26.

- 이와 같이 중소기업의 관세환급의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최근 몇 년간 환급 실적과 환급 활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10년간 간이정액환급을 포함한 관세환급 실적은 건수, 업체 수, 금액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또한 중소기업 중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는 업체의 비중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이는 FTA가 확대되면서 관세납부액이 감소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징수액 대비 환급액 비중 또한 하락세인 점을 보았을 때 환급 활용률 자체가 낮아지고 있음
 - 2010년대 초에는 관세징수액 대비 관세환급액의 비중이 30% 가까이 되었으나 2010년대 후반에는 20% 이하로 감소하고 있음

- 이러한 환급 활용률의 감소는 기존의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환급 지원 정책을 편의를 제공하거나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 관세환급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의 개선은 미비했기 때문으로 보임
 - 더욱이 관세환급 규정은 FTA의 확산, 무역거래의 다양화 등으로 인한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해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활용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활용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관세환급을 적용하면서 겪는 문제점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 중소기업이 관세환급을 활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납세협력 비용이 중소기업에는 과중하다는 점임
 - 또한 관세환급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미비한 부분이 있어 중소기업이 관세환급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간소한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간이정액환급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개별환급에 비해 환급액이 정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음

-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이 관세환급을 활용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여 관세환급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제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제도 관련 규정과 운용 현황을 살펴보면서 중소기업의 환급 활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함
- 제III장에서는 주요국의 관세환급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관세환급제도의 미비점을 검토하고자 함
- 제IV장에서는 제II장과 제III장에서 살펴본 규정 및 현황을 통해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활용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II. 수출용 원재료 관세 등 환급제도 개요

1. 수출용 원재료 관세 등 환급의 의의

가. 관세환급의 의의

- 환급이란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조세를 특정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돌려주는 것을 말함
 - 조세는 과다 또는 잘못 납부되었거나 과세대상인 물품 또는 용역이 조세를 징수한 국가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지 않은 경우 등에 납세자에게 환급될 수 있음
-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수입물품이 최종적으로 수입국가에서 사용·소비되지 않고 수출되는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및 기타 제세가 환급됨
 - 최종적으로 수입국가에서 사용·소비되지 않는다는 것은 수입물품이 수출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후 수출되는 경우를 포함함
- 이와 같이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소비되는 수입물품이 수입된 때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것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이하 관세환급)이라 함
 - 「교토협약」에서는 물품이 수출될 때 당해 물품 또는 당해 물품에 포함되거나 그 생산에 사용된 재료에 부과된 수입관세 및 제세를 환불하는 것을 환급이라고 정의함³⁾

나. 관세환급의 목적

1) 소비지국 과세

- 관세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당해 관세액이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임
 - 즉 납세자인 소비자가 수입물품을 소비·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비세의 일종임

- 이러한 관세를 수출되는 물품에 부과·징수할 경우 수출국뿐 아니라 그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도 다시 관세를 부과하게 되어 이중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함⁴⁾
 - 따라서 동일한 물품에 대한 관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경세 조정이 필요함

- 따라서 실제로 소비행위가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소비세를 과세하는 원칙에 따라 관세환급은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수출국에서 부과·징수한 관세를 환급함
 - 즉 관세환급은 수출국가의 관세를 환급함으로써 소비지인 수입국가에서 수입물품의 관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음

- WTO 체제에서도 수출국가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소비된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징수된 관세에 한하여 환급을 허용하고 있음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은 수출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수입 투입요소에 부과된 수입과징금을 초과하는 수입과징금의 경감 또는 환급을 수출보조금으로 정의하고 있음⁵⁾

3)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F 제3장 E2./F3.

4) 정재완, 『관세환급특례법』, 도서출판 두남, 2000, p. 19

5)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부속서 1. 수출보조금 예시목록 자.

- 수입과징금은 관세·조세 및 다른 재정적 과징금으로서 수입에 부과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것을 포함함
- 경감 또는 환급은 수입과징금의 완전 또는 부분적인 면제 또는 유예를 포함함
- 수출보조금은 금지보조금의 하나로 WTO 협정국은 이를 지급하거나 유지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계조치의 대상이 됨⁶⁾
- 이와 같이 관세환급은 소비지국이 아닌 국가에서 과세된 관세에 대한 환급을 허용하는 것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부당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님
- 따라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부과·징수된 관세보다 과다하게 환급되어 공정한 무역질서를 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2) 수출 지원

-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부담을 제거함으로써 수출물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함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이는 수출물품의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져 수출가격 또한 상승하게 되어 가격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됨⁷⁾
- 이는 수출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제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의 환급이 필요함
- 다시 말해서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 관세를 부과·징수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를 통해 수출을 지원함⁸⁾
- 수출산업에 대하여 국가에서 재정적인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함으로써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관세율을 0으로 적용하는 것과 유사함

6)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금지

7) 정재호·이명현, 『관세환급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1, p. 28

8) 정재완(2000), p. 21

- 또한 관세환급은 관세의 자원 재분배 효과도 완화하여 수출용 원재료의 경쟁재인 국내산업으로 생산요소가 이전하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수출을 지원하기도 함⁹⁾
 - 수입물품은 부과된 관세만큼 국내가격이 상승하므로 경쟁재의 국내 생산이 유리해져 생산요소가 이동하게 되고, 수출물품의 생산이 감소하게 됨
 - 그러나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환급함으로써 생산요소가 경쟁재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출산업의 위축을 완화시킬 수 있음

2. 수출용 원재료 관세 등 환급제도

가. 관세환급제도

- 우리나라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관세환급특례법)」에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을 규정하고 있음
 - 「관세환급특례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능률적인 수출 지원과 균형 있는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¹⁰⁾

1) 관세환급의 요건

- 「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을 수출자나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함¹¹⁾
 - 관세 등이란 관세, 임시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말함

- 따라서 관세환급을 위해서는 ① 수출용 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을 ② 수출

9) 정재완(2000), pp. 21~22

1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조

1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등에 ③ 일정기간 내에 제공해야 함

- 수출용 원재료는 수입 당시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후에 수출 등에 제공되면 됨¹²⁾
- 관세환급은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유상수출에 한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외화를 획득하는 국내영업활동을 정책적으로 그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¹³⁾
-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후 일정기간 내에 수출 등을 완료하도록 수출이행 기간을 두는 이유는 과다환급을 최소화하기 위함임¹⁴⁾

□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¹⁵⁾

-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
 -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
 - 해당 수출물품의 포장용품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물품
-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 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봄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¹⁶⁾

12) 정재완(2000), p. 72

13)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p. 502

14) 김기인(2007), p. 505

1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¹⁷⁾
 -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¹⁸⁾
 -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는 것
-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경우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함¹⁹⁾
- 수출 등에 제공되는 데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플랜트 수출에 제공되는 물품이 불가피한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함
 - 불가피한 지연 사유란 무역상대국의 전쟁·사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정치적·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출 등이 지연되었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함
 - 수출용 원재료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거래되고, 그 거래가 직전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거래가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이루어진 경우 해당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된 날부터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최후의 거래가 있는 날까지의 기간은 수출 이행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다만 수출용 원재료가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2) 관세환급의 방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하기 위하여 관세 환급액을 산출하는

1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17)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함

1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함

1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

방법에는 개별환급과 정액환급의 두 가지 방법이 있음²⁰⁾

-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품명·규격·수량·세액을 원재료 별로 확인하여 관세 환급액을 산출함
- 정액환급은 과세당국이 수출물품별로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을 환급하는 방법임

가) 개별환급

- 개별환급은 수출 등에 제공한 물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하였을 때 납부한 관세 등을 일일이 소요량 계산서를 통하여 계산하여야 함²¹⁾
 - 소요량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데에 드는 원재료의 양으로서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손모량을 포함한 것을 말함²²⁾
 - 생산에는 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하는 것을 포함함
 - 손모량은 수출물품을 정상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손실량을 말하며, 불량품에 소요된 원재료 중 재활용이 가능한 양은 제외함²³⁾
- 소요량 계산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자는 환급신청 전에 소요량 산정방법 등을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된 바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해야 함²⁴⁾
 - 소요량 산정방법 등 신고서에는 수출물품명, 소요량 산정방법, 소요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 및 적용 기간을 기재하고, 수출물품 제조공정설명서를 첨부해야 함²⁵⁾
 - 수출물품과 소요원재료는 품명·규격별로 분류하여 소요량 산정 및 계산을 해야 함²⁶⁾

20) 김기인(2007), p. 511

21) 관세청 관세용어사전, <https://www.customs.go.kr/kcs/ad/tr/trTermView.do?mi=2902&s=&termId=2350>, 검색일자: 2021. 2. 1.

2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3)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

2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2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0조

26)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2조

- 환급신청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 환급신청자는 당해 수출물품을 생산한 자가 산정한 소요량에 의하여 소요량 계산서를 작성해야 함²⁷⁾
- 이와 같이 자율적으로 소요량을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은 수출물품별 평균 소요량 등을 기준으로 한 표준 소요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²⁸⁾
- 표준 소요량은 소요량 계산업무의 간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환급신청자로 하여금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게 할 수 있음
 - 이는 소요량 계산제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일정한 원재료의 투입이 규정되거나 소요량의 변화가 거의 없는 품목 등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임²⁹⁾
 - 따라서 기업 자율에 의한 소요량 계산제도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 표준 소요량은 따로 고시되고 있지 않음

나) 정액환급

- 관세청장은 관세 등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음³⁰⁾
- 이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은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때에 납부하는 관세 등으로 보아 환급함
- 정액환급의 경우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을 환급함에 따라 정액환급률표상의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사실만을 확인하고 관세환급액을 산출함³¹⁾
- 따라서 개별환급에서 요구되는 원재료별 품명·규격·수량·납부세액 등의 확인이 필요 없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도 구비하지 않아도 됨

2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1조

2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29) 정재완(2000), p. 247

3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31) 김기안(2007), p. 511

- 수출물품이 정액환급률표에 기재된 경우 수출 등에 제공된 날에 시행되는 정액환급률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환급함³²⁾
 -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때에 처음 수출한 날부터 정액환급률표 적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이후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함³³⁾
 - 다만 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않기로 비적용 승인을 얻은 경우 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을 하지 않음

- 정액환급률표는 수출용 원재료에 의하여 둘 이상의 제품이 동시에 생산되는 등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과 중소기업 수출물품에 대하여 정할 수 있음³⁴⁾
 - 생산공정이 특수한 수출물품의 정액환급률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이라 하며,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을 간이정액환급이라 함

-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는 최근 6월 이상 기간 동안의 수입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매입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을 기초로 정해야 함³⁵⁾
 - 현재 고시된 특수공정물품 정액환급률표는 없음

-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최근 6월 이상 기간 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환급액 또는 평균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해야 함³⁶⁾
 -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중소기업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³⁷⁾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함
 -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이 6억원 이하일 것
 -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이 6억원

3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4조

3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2조

3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3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5조

3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6조

3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

이하일 것

-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해야 함

〈표 II-1〉 간이정액환급률표 예시

(단위: 원)

HSK	세번명	수출금액(FOB) 1만원당 환급액
0202.20-1000	갈비	10
0202.30-0000	뼈 없는 것	100
0303.23-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10
0303.24-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10
0303.25-0000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텔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20
0303.29-0000	기타	10
0303.4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50
0303.4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80
0303.54-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e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10
0303.56-0000	날새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10
0303.57-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140
0303.59-2000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10
0303.59-9000	기타	10
0303.67-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10
0303.68-0000	블루 화이팅스(blue whit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10
0303.69-9000	기타	10

〈표 II-1〉의 계속

HSK	세번명	수출금액(FOB) 1만원당 환급액
0303.84-0000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10
0303.89-2000	갈치	20
0303.89-6000	학꽂치(Hyporhamphus sajori)	10
0303.89-9099	기타	10
0303.99-0000	기타	30

자료: 「간이정액환급률표」

3) 관세환급의 신청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은 수출물품이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에 할 수 있음³⁸⁾
 - 기타 국내 판매·공사 또는 공급 등을 수출로 보아 환급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 등을 완료한 경우에 할 수 있음
 - 이 경우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때, 해당 공사를 완료한 때 또는 해당 물품을 공급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수출 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하며, 수출사실 확인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 관세 등을 환급받으려는 자는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할지 세관에 환급신청을 해야 함³⁹⁾
 - 다만 수출 등에 제공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세액에 대하여 보정, 수정 또는 경정, 환급금액이나 과다 환급금액의 징수 또는 자진신고·납부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

3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3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해야 함⁴⁰⁾

- 기타 국내 판매·공사 또는 공급 등을 수출로 보아 환급하는 경우에는 수출사실 확인서류에 당해 물품을 수출·판매·공사 또는 공급 등을 한 자로 기재된 자가 해야 함
- 다만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한 환급신청의 경우에는 제조자가 신청해야 함⁴¹⁾

□ 관세 등을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신청서에 수출사실 확인서류, 소요량 계산서,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⁴²⁾

- 정액환급률표가 적용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소요량 계산서,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음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의 확인은 수입신고필증에 의하며,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 거래로 공급받은 경우 공급자가 발행한 세액증명 서류가 필요함

- 국내에서 제조·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를 발행할 수 있음⁴³⁾
- 또한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수입분증)를 발급할 수 있음

□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모든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신청해야 함⁴⁴⁾

- 다만 일괄 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경우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4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4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
4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4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4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8조

- 환급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환급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함⁴⁵⁾
 - 환급금의 정확 여부는 환급 후에 심사할 수 있으며, 과다환급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환급하기 전에 심사해야 함
 - 환급금의 지급을 결정한 세관장은 환급신청인이 관할지 세관장에게 통보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급금을 지급함⁴⁶⁾

4) 관세환급 방법의 조정

- 관세청장은 관세환급이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짧게 정하여 환급하거나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을 정하여 환급하게 할 수 있음⁴⁷⁾
 - 다음에 해당하여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납부하는 세액보다 관세 등을 환급할 때 현저히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수입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관세율 변동, 수입가격 변동,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하여 수출용 원재료가 되는 경우로서, 각 원재료가 생산과정에서 수출물품과 국내공급물품에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출신고 수리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에 사용해야 함⁴⁸⁾
 - 수입시점별 단가 변동 등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임에도

4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46)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1조

4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48)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4조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지 않을 수 있음⁴⁹⁾

- 단축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모든 수입신고필증상의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는 수입원재료 물량을 환급 등에 모두 사용한 경우
- 노사분규 등으로 제조장의 가동이 장기간 중단되었거나 생산공정에 투입이 지연되어 단축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 수출물품의 생산공정이 3월 이상 소요되어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
-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별로 재고관리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
-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순서대로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한 것으로 재고관리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단축된 유효기간 외의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원재료·제품 수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으로 환급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신고를 수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⁵⁰⁾에 따라 환급물량을 안분⁵¹⁾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 등에 사용해야 함⁵²⁾

○ 할당관세 적용기간 경과, 세율 변화,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 해당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상 환급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으로 동 부족물량에 대한 환급 등을 신청할 수 있음⁵³⁾

49)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5조

50)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 = 전년도 해당 원재료의 세율별 수입물량/전년도 해당 원재료의 전체 수입물량×100(수입물량에는 기납증 또는 수입분증을 통해 공급받은 물량을 제외함)

51)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 환급물량×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환급물량에는 기납증 또는 수입분증을 통해 공급받은 물량을 제외함)

52)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7조

53)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 또한 동일 품목에 대한 다세율 적용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세율별 환급물량을 안분하지 않을 수 있음
 - 세율별 품목이 상호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갖고 있지 않아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경우
 - 수출이행 기간 중 단일 세율로만 수입하는 경우
 -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사용된 원재료별로 재고관리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
 -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순서대로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것으로 재고관리하여 해당 재고관리기록대로 환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환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
 - 환급 등을 신청한 수입신고필증상의 원재료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원재료·제품 수불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나. 관세환급제도의 운용 현황

1) 관세환급액의 추세

-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관세환급 실적을 보면 환급 건수는 2015년, 환급금액 및 업체수는 2012년 최고 실적을 보인 이후 감소하고 있음
 - 2013년까지 증가하던 환급 건수는 2014년 감소하였다가 2015년 37만여 건으로 최다였지만 이후 하락세가 계속되며 2020년에는 30만여 건을 기록함
 - 2012년 5조 1,469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환급된 후 소폭 상승한 해가 있었으나, 그 상승세가 지속되지는 않고 2020년 2조 6,796억원이 환급됨

〈표 II-2〉 최근 10년간 관세환급 실적

(단위: 건, 억원, 수)

연도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전체		
	소요량환급			원상태환급			건수	금액	업체 수	건수	금액	업체 수
	건수	금액	업체 수	건수	금액	업체 수						
'11	142,236	42,672	4,301	91,715	4,458	4,179	114,987	2,462	10,395	348,938	49,592	17,361
'12	141,607	44,212	4,219	92,851	4,458	3,968	129,130	2,799	10,594	363,588	51,469	17,391
'13	144,218	36,130	4,098	96,217	4,410	3,760	129,553	2,666	10,620	369,988	43,207	17,097
'14	141,310	41,455	4,022	96,060	4,565	3,702	127,728	2,415	10,648	365,098	48,435	17,090
'15	146,614	33,303	3,925	104,669	4,823	3,725	121,359	2,114	10,253	372,642	40,240	16,657
'16	142,379	23,062	3,558	106,060	4,809	3,780	109,008	1,770	9,641	357,447	29,641	15,723
'17	138,750	26,127	3,246	111,768	5,345	3,464	104,716	1,505	9,224	355,234	32,977	14,853
'18	135,631	25,454	3,065	117,113	5,374	3,318	96,672	1,223	8,763	349,416	32,051	14,178
'19	126,811	29,006	2,994	117,982	4,657	3,171	90,802	1,141	8,596	335,595	34,804	13,851
'20	125,800	21,760	2,892	96,704	3,985	2,978	85,004	1,051	8,395	307,508	26,796	13,380

자료: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 검색일자: 2021. 2. 3.

- 관세징수액의 감소가 관세환급액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나 관세징수액 대비 관세환급액 비중이 최근 10년 간 하락하는 것으로 보아 이의 영향은 아닌 것으로 보임
 - 관세 등을 부과·징수한 후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금액을 환급하는 것이므로 관세징수액의 변동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⁵⁴⁾
 - 2010년 이후 관세징수액은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크게 하락하지는 않은 반면, 관세환급액은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관세징수액 대비 관세환급액의 비중은 2012년 까지 상승하며 30%를 넘다가 2014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9년에는 20.6%를 차지함

54) 정재호·강성훈, 『FTA 확산에 따른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p. 30

〈표 II-3〉 최근 10년간 관세징수액 대비 관세환급액

(단위: 억원)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관세징수액 ¹⁾	155,869	162,713	164,840	171,025	145,879	151,016	148,065	167,160	182,242	168,837
관세환급액	40,187	49,592	51,469	43,207	48,435	40,240	29,641	32,977	32,051	34,804
환급/징수	25.8%	30.5%	31.2%	25.3%	33.2%	26.6%	20.0%	19.7%	17.6%	20.6%

주: 1)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와 내국세의 합으로 관세 등의 환급대상이 아닌 부가가치세 징수액을 제외함
 자료: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 검색일자: 2021. 2. 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최근 5년간 수출 대비 환급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수출업체 중 환급업체의 비중이 2015년 18.4%에서 2019년 14.2%로, 수출을 하면서도 환급을 받지 않은 업체가 늘어났음
- 또한 수출금액 1달러당 환급액은 2015년 7.66원에서 2018년 5.31원으로 떨어졌다가 2019년 6.43원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인 것으로 보임
 - 수출금액 1달러당 환급금액을 보았을 때 환급이 수출물품의 가격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는 반면, 환급 활용률은 15% 안팎으로 매우 미미한 수준임

〈표 II-4〉 최근 5년간 수출 대비 관세환급 실적

(단위: 억원, 백만달러, 원)

연도	환급		수출		환급/수출	
	금액	업체 수 (개)	금액	업체 수 (개)	수출 1달러 당 환급금액	업체 수 (%)
2015	40,240	16,657	525,664	90,761	7.665	18.4
2016	29,641	15,723	494,281	93,045	6.007	16.9
2017	32,977	14,853	572,593	93,922	5.769	15.8
2018	32,051	14,178	603,627	96,236	5.310	14.7
2019	34,804	13,851	541,200	97,418	6.431	14.2

자료: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 검색일자: 2021. 2. 3; 관세청, 「2019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보도자료, 2020. 12. 1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중소기업을 제외한 수출 대기업·중견기업 대비 개별환급 업체 비중과 수출 1달러 당 환급금액 또한 최근 5년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수출 대기업·중견기업 수보다 개별환급을 적용받는 업체의 수가 2배 가까이 많은 것은 수출 중소기업이면서 개별환급을 받는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임

〈표 II-5〉 최근 5년간 수출 대비 개별환급 실적

(단위: 억원, 백만달러, 원)

연도	개별환급		대기업·중견기업 수출 ¹⁾		환급/수출	
	금액	업체 수 ²⁾ (개)	금액	업체 수 (개)	수출 1달러 당 환급금액	업체 수 (%)
2015	38,126	6,404	434,673	2,535	8.771	253
2016	27,871	6,082	402,230	2,485	6.929	245
2017	31,472	5,629	471,197	2,454	6.679	229
2018	30,828	5,415	500,197	2,745	6.163	197
2019	33,663	5,255	441,400	2,889	7.626	182

주: 1) 간이정액환급 적용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제외한 수출업체

2) 간이정액환급 적용업체가 원상태 환급을 적용받아 중복으로 집계된 업체 수를 제거하기 위해 전체 환급 업체 수에서 간이정액환급 업체수를 뺀

자료: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 검색일자: 2021. 2. 3; 관세청(2020. 12. 1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또한 수출 중소기업 중 환급적용 업체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수출 1달러당 환급금액 역시 줄어들고 있음
 - 특히 수출 중소기업 대비 간이정액환급 업체의 비중은 약 10% 정도로 중소기업이 개별환급을 받는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환급 활용률이 매우 낮음
 - 또한 2019년 기준 수출 1달러당 환급금액이 개별환급은 7.7달러, 간이정액환급은 1.1달러임을 볼 때 간이정액환급에서 현저히 과소환급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간이정액환급을 받지 않고 개별환급을 적용받는 업체가 상당한 것으로 보임

〈표 II-6〉 최근 5년간 수출 대비 간이정액환급 실적

(단위: 억원, 백만달러, 원)

연도	간이정액환급		중소기업 수출		환급/수출	
	금액	업 체수 (개)	금액	업체 수 (개)	수출 1달러 당 환급금액	업체 수 (%)
2015	2,114	10,253	90,991	88,226	2.323	11.6
2016	1,770	9,641	92,052	90,560	1.923	10.6
2017	1,505	9,224	101,395	91,468	1.484	10.1
2018	1,223	8,763	103,430	93,491	1.182	9.4
2019	1,141	8,596	99,800	94,529	1.143	9.1

자료: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 검색일자: 2021. 2. 3; 관세청(2020. 12. 1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중소기업이 개별환급을 받는 경우를 고려하여 전체 중소수출기업 대비 환급활용률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전체 중소수출기업 중 최대 14.7%, 최소 11.6%가 환급을 받음
 - 대·중견기업이 환급활용률을 각 0%, 50%, 100%로 가정하여 산출한 개별환급 적용 중소기업 수를 간이정액환급 업체 수와 합산하고, 이를 환급을 적용받는 중소기업 수로 가정함
 - 최근 5년간 환급을 적용하는 중소기업의 수를 최대로 가정했을 때 활용률은 15%를 상회하지만, 대·중견기업의 환급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중소기업의 환급 활용률은 10% 초반 대에 머물 것으로 보임

〈표 II-7〉 최근 5년간 중소기업 환급활용률

(단위: 개, %)

연도	전체 중소수출 업체수	환급 적용 중소기업					
		대·중견기업 100% 환급 시		대·중견기업 50% 환급 시		대·중견기업 0% 환급 시	
		업체 수 ¹⁾	비중	업체 수 ²⁾	비중	업체 수 ³⁾	비중
2015	88,226	14,122	16.0	15,390	17.4	16,657	18.9
2016	90,560	13,238	14.6	14,481	16.0	15,723	17.4
2017	91,468	12,399	13.6	13,626	14.9	14,853	16.2
2018	93,491	11,433	12.2	12,806	13.7	14,178	15.2
2019	94,529	10,962	11.6	12,407	13.1	13,851	14.7

주: 1) 업체수 = 간이정액환급 업체수+(개별환급 업체수-수출 대·중견기업 수)
 2) 업체수 = 간이정액환급 업체수+(개별환급 업체수-(수출 대·중견기업 수×0.5))
 3) 업체수 = 전체환급 업체수

자료: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 검색일자: 2021. 2. 3; 관세청(2020. 12. 18.)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환급방법별 관세환급 실적

- 최근 10년 간 관세환급 방법별 비중 변동을 보면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업체 수 기준 비중은 늘어나지만, 건수 및 금액 기준 비중은 줄어들고 있음
 - 즉 전체환급 대비 개별환급의 건수와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2011년 개별환급 건수와 금액의 비중은 각 67%, 95%였다가 2019년 각 72.4%, 96.1%로 증가함
- 2019년 기준 개별환급을 적용받은 43.9%의 업체가 전체 금액의 96.1%를 환급받았으며, 62.7%의 업체는 3.9%의 금액을 환급받음
 - 관세환급액의 거의 대부분이 개별환급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런 경향은 최근 10년간 더욱 심화되고 있음

〈표 II-8〉 최근 10년간 전체환급 대비 환급방법별 비중

(단위: 건, %)

연도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소요량환급			원상태환급			합계					
	건수	금액	업체 수	건수	금액	업체 수	건수	금액	업체 수 ¹⁾	건수	금액	업체 수
'11	40.8	86.0	24.8	26.3	9.0	24.1	67.0	95.0	48.8	33.0	5.0	59.9
'12	38.9	85.9	24.3	25.5	8.7	22.8	64.5	94.6	47.1	35.5	5.4	60.9
'13	39.0	83.6	24.0	26.0	10.2	22.0	65.0	93.8	46.0	35.0	6.2	62.1
'14	38.7	85.6	23.5	26.3	9.4	21.7	65.0	95.0	45.2	35.0	5.0	62.3
'15	39.3	82.8	23.6	28.1	12.0	22.4	67.4	94.7	45.9	32.6	5.3	61.6
'16	39.8	77.8	22.6	29.7	16.2	24.0	69.5	94.0	46.7	30.5	6.0	61.3
'17	39.1	79.2	21.9	31.5	16.2	23.3	70.5	95.4	45.2	29.5	4.6	62.1
'18	38.8	79.4	21.6	33.5	16.8	23.4	72.3	96.2	45.0	27.7	3.8	61.8
'19	37.8	83.3	21.6	35.2	13.4	22.9	72.9	96.7	44.5	27.1	3.3	62.1
'20	40.9	81.2	21.6	31.4	14.9	22.3	72.4	96.1	43.9	27.6	3.9	62.7

주: 1) 간이정액환급 적용 업체가 원상태환급을 적용받은 경우가 있어 업체 수가 중복될 수 있음
 자료: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 검색일자: 2021. 2. 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최근 10년간 환급금액이 줄어든 영향으로 환급 건당 환급금액 또한 감소하는 추세로 2011년 1,400만원에서 2020년 900만원으로 줄었음
 - 특히 개별환급 중 소요량 계산방식에 의한 환급의 건당 금액 감소폭이 컸으며, 원상태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은 10년간 약 100만원 정도 감소하였음
- 또한 하나의 업체가 연간 환급받는 금액 또한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011년 2.86억원이었던 환급액이 2020년 2억원으로 적어짐
 - 개별환급의 경우 업체당 환급금액은 2011년 10억원에 달했으나 2020년 7.5억원으로 간이정액환급의 적용 기준인 6억원에 가까워지고 있음
 - 그러나 원상태환급의 경우 2011년 1억원이었던 업체당 환급금액이 2020년 1.34억원이 되며 10년간 지속적으로 소폭의 상승세를 보임
 - 간이정액환급 또한 2011년 한 업체당 2,400만원 정도 환급을 받았으나 2020

년에는 1,300만원 정도로 환급금액이 줄었음

〈표 II-9〉 최근 10년간 환급 건·업체당 환급금액

(단위: 억원)

연 도	개별환급						간이정액환급		전체환급	
	소요량환급		원상태환급		합계					
	금액 /건수	금액 /업체 수	금액 /건수	금액 /업체 수	금액 /건수	금액 /업체 수 ¹⁾	금액 /건수	금액 /업체 수	금액 /건수	금액 /업체 수
'11	0.30	9.92	0.05	1.07	0.20	5.56	0.02	0.24	0.14	2.86
'12	0.31	10.48	0.05	1.12	0.21	5.94	0.02	0.26	0.14	2.96
'13	0.25	8.82	0.05	1.17	0.17	5.16	0.02	0.25	0.12	2.53
'14	0.29	10.31	0.05	1.23	0.19	5.96	0.02	0.23	0.13	2.83
'15	0.23	8.48	0.05	1.29	0.15	4.98	0.02	0.21	0.11	2.42
'16	0.16	6.48	0.05	1.27	0.11	3.80	0.02	0.18	0.08	1.89
'17	0.19	8.05	0.05	1.54	0.13	4.69	0.01	0.16	0.09	2.22
'18	0.19	8.30	0.05	1.62	0.12	4.83	0.01	0.14	0.09	2.26
'19	0.23	9.69	0.04	1.47	0.14	5.46	0.01	0.13	0.10	2.51
'20	0.17	7.52	0.04	1.34	0.12	4.39	0.01	0.13	0.09	2.00

주: 1) 간이정액환급 적용 업체가 원상태환급을 적용받은 경우가 있어 업체 수가 중복될 수 있음
 자료: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 검색일자: 2021. 2. 3.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Ⅲ. 주요국의 관세환급제도

1. 미국

- 관세환급이란 물품 수입 시 미국 「연방법」에 따라 부과되어 납부하였던 관세, 내국세,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승인하에 되돌려주는 것을 말함⁵⁵⁾
- 환급되는 관세 등에는 관세, 원산지 표시에 따른 추가 관세, 수입에 부과되는 내국세, 물품처리수수료, 항만유지비가 포함됨⁵⁶⁾
- 그러나 물품이 수입신고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때 부과되는 덤빙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는 환급되지 않음
- 또한 관세할당 대상 물품 중 할당량 초과 관세율이 적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도 환급되지 않음
- 다만 미사용 물품 환급 대상 농산물이나 제조물품 환급 대상 또는 미사용 물품 환급 대상 담배의 경우 할당량 초과 관세도 환급될 수 있음

가. 제조물품의 관세환급

1) 관세환급의 요건

-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미국에서 제조 또는 생산한 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수출한 경

55) 미국 19 CFR 190.2

56) 미국 19 CFR 190.3

우 그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함⁵⁷⁾

- 제조 또는 생산이란 고유한 명칭, 성질, 용도가 새롭거나 다른 물품을 만드는 것 또는 새롭거나 다른 물품은 아니지만 특정용도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을 말함⁵⁸⁾
- 다만 수입밀로 생산된 밀가루 및 부산물이 수출되는 경우 환급되지 않음⁵⁹⁾

□ 또한 수입물품 또는 수입물품과 동일한 HTS 8단위 물품이, 수입물품이 수입된 후 5년 이내에 수출물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사용된 경우 환급이 허용됨⁶⁰⁾

- 이 경우 수입물품이 실제로 수출물품의 제조 또는 생산에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급이 가능함
 - 제조자 또는 생산자는 관세환급의 근거가 되는 수입물품을 지정할 수 있음
- 수입물품이나 동일 8단위 물품 또는 수출물품을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에만 관세환급이 허용되며, 이러한 양도는 별도의 증명서 없이 일반적인 사업과정에서의 시업기록에 의하여 입증될 수 있음
 - 제조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물품 또는 동일 8단위 물품을 수령한 경우
 - 수출자가 제조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물품을 수령한 경우

□ 관세환급에 있어서 수출이란 물품을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거래에 따라 다른 국가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자유무역지대에 반입하거나 항공기 또는 선박의 공급품으로 적재하는 것을 포함함⁶¹⁾

- 수출자의 신원, 수출의 사실·일자가 완전히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의 기록 또는 미국 정부의 전자수출시스템을 통해 입증될 수 있음⁶²⁾

57) 미국 U.S.C. 19 제1313조 제a항
 58) 미국 19 CFR 190.2
 59) 미국 U.S.C. 19 제1313조 제a항
 60) 미국 U.S.C. 19 제1313조 제b항
 61) 미국 19 CFR 190.2
 62) 미국 U.S.C. 19 제1313조 제i항

-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제조 또는 생산된 물품의 수출은 그 수입물품이 수입된 후 5년 이내에 완료되어야 관세환급이 가능함⁶³⁾
 - 대체환급의 경우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관세환급이 허용됨
 - 관세환급의 근거로 지정된 수입물품을 수입 후 5년 이내에 제조 또는 생산에 사용해야 하며, 수출 물품이 제조 또는 생산되어야 함
 - 또한 완성된 물품은 지정물품의 수입 후 5년 내에 수출되어야 함

- 한편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제조 또는 생산된 물품에 대한 환급금액은 수출물품에 포함된 수입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 내국세, 수수료의 99%를 초과할 수 없음⁶⁴⁾
 - 수입물품에 납부된 관세는 승인된 회계방법에 따라 식별된 물품의 각 단위에 실제 부과된 관세, 내국세, 수수료임⁶⁵⁾

- 반면 대체물품이 수출물품의 제조 또는 환급에 사용된 경우 환급금액은 단위당 평균관세에 따라 결정됨⁶⁶⁾
 - 단위당 평균관세란 동일한 란에 납세신고된 모든 단위의 물품에 대하여 환급되는 관세, 내국세, 수수료를 각 단위의 물품에 동일하게 할당한 금액을 말함⁶⁷⁾
 - 단위당 평균관세로 산출된 환급금액은 다음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9%를 초과할 수 없음⁶⁸⁾
 -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내국세, 수수료
 - 대체물품이 수입된 경우 부과될 관세, 내국세, 수수료

2) 관세환급의 방법

- 관세환급 방법에는 일반제조환급과 특정제조환급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어떤

63) 미국 19 CFR 190.27

64) 미국 U.S.C. 19 제1313조 제1항

65) 미국 19 CFR 190.51

66) 미국 U.S.C. 19 제1313조 제1항; 19 CFR 190.22

67) 미국 19 CFR 190.2

68) 미국 U.S.C. 19 제1313조 제1항; 19 CFR 190.22

방법으로 환급을 받을지 의향서를 제출하여 결정(ruling)을 받아야 함⁶⁹⁾

- 일반제조환급이란 공통 제조작업의 환급을 간소화하여 지정한 것으로 일반제조환급으로 공표된 작업에 종사하는 제조자 또는 생산자는 이에 따라 환급이 가능함 - 그러나 일반제조환급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정제조환급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아님
- 반면 일반제조환급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특정제조환급을 적용해야 함

가) 일반제조환급

- 일반제조환급 결정은 CFR의 관세환급 파트의 부록에 포함되어 있으며, CBP는 필요한 경우 새로운 일반제조환급 결정을 발급하고, 이를 부록에 포함시킴⁷⁰⁾
- 일반제조환급 결정이 발급된 물품은 삼베 또는 기타 직물원료, 복합부품, 아마씨, 모피 또는 모피제품, 오렌지 주스, 석유 또는 석유 파생품, 원당, 철강, 설탕, 천, 직조품이 있음⁷¹⁾
- 결정에는 여러 가지 물품이 제조되거나 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물품의 손실이나 추가가 발생한 경우, 재고관리, 환급신청 근거 등과 관련한 해석이 포함됨

69) 미국 19 CFR 190.7; 190.8

70) 미국 19 CFR 190.7

71) 미국 19 CFR Part 190 Appendix A

[그림 III-1] 미국 일반제조환급 결정 예시

<p>IV. GENERAL MANUFACTURING DRAWBACK RULING UNDER 19 U.S.C. 1313(A) FOR BURLAP OR OTHER TEXTILE MATERIAL (T.D. 83-53)</p> <p>Drawback may be allowed under 19 U.S.C. 1313(a) upon the exportation of bags or meat wrappers manufactured with the use of imported burlap or other textile material, subject to the following special requirements:</p> <p style="text-align: center;"><i>A. Imported Merchandise or Drawback Products¹ Used</i></p> <p>¹Drawback products are those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drawback law and regulations.</p> <p>Imported merchandise or drawback products (burlap or other textile material) are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e exported articles upon which drawback claims will be based.</p> <p style="text-align: center;"><i>B. Exported Articles on Which Drawback Will Be Claimed</i></p> <p>Exported articles on which drawback will be claimed must be manufactured in the United States using imported merchandise or drawback products.</p> <p style="text-align: center;"><i>C. General Statement</i></p> <p>The manufacturer or producer manufactures or produces for its own account. The manufacturer or producer may manufacture or produce articles for the account of another, or another manufacturer or producer may manufacture or produce for the account of the manufacturer or producer under contract within the principal and agency relationship outlined in T.D.s 55027(2) and 55207(1) (<i>see</i> §190.9).</p> <p style="text-align: center;"><i>D. Process of Manufacture or Production</i></p> <p>The imported merchandise or drawback products will be used to manufacture or produce articles in accordance with §190.2.</p> <p style="text-align: center;"><i>E. Multiple Products</i></p> <p>Not applicable.</p> <p style="text-align: center;"><i>F. Loss or Gain</i></p> <p>Not applicable.</p>

자료: 미국 19 CFR Part 190 Appendix A

- 일반제조환급 결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환급 신고서를 제출할 세관에 관세환급 신청을 하는 때에 또는 그 전에 의향통지서를 제출해야 함⁷²⁾
- 이 경우 일반제조환급 결정을 변경 없이 따른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결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특정제조환급 결정을 적용해야 함

⁷²⁾ 미국 19 CFR 190.7

- 의향통지서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제조자 또는 생산자의 이름, 주소, 납세자 식별번호
 - 통지서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는 공장의 위치
 - 적용하고자 하는 일반제조환급 결정의 번호
 - 결정에서 특별히 기술되지 않은 물품의 명세, 대체환급에 따라 지정된 수입물품의 HTSUS 8단위 품목번호
 - 결정에서 특별히 기술되지 않은 제조 또는 생산 공정의 상세
 - 환급 산출에 사용한 근거

- 일반제조환급 결정 적용 의향통지서를 제출받은 세관은 의향통지서를 심사하고, 통지서를 제출한 자에게 인수 및 승인서와 고유번호를 발급함⁷³⁾
 - 다음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의향통지서를 인수 및 승인한다는 통지서를 즉시 발급함
 - 통지서가 요구되는 정보를 모두 포함함
 - 제조자 또는 생산자가 확인한 일반제조환급 결정이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적용 가능함
 - 제조자 또는 생산자가 확인한 일반제조환급 결정이 변경 없이 적용됨
 - 기술된 제조 또는 생산 공정이 환급규정에 따른 제조 또는 생산에 해당함
 - 승인서에는 의향통지서를 승인하기 위해 부여한 고유한 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며, 당해 번호는 일반제조환급 결정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재해야 함

- 일반제조환급 결정의 승인통지서는 기한 없이 유효함⁷⁴⁾
 - 다만 다음의 경우 승인통지서의 효력은 종료됨
 - 결정에 따른 환급이 5년 이내에 신청되지 않고, 세관 공보에 그 종료 통지가 게시된 경우
 - 결정의 승인을 발급받은 제조자 또는 생산자가 결정의 종료를 CBP에 결정의

73) 미국 19 CFR 190.7

74) 미국 19 CFR 190.7

종료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나) 특정제조환급

- 일반제조환급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관세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물품의 제조자 또는 생산자는 특정제조환급을 적용해야 함⁷⁵⁾
 - 특정제조환급 결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그 신청서를 CBP에 제출해야 함
 - 특정제조환급 결정 신청서에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신청자의 이름, 주소, 납세자 식별번호
 - 종사하고 있는 사업 유형의 상세
 - 수출물품을 만들기 위해 지정 또는 대체물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주는 제조 또는 생산 공정의 상세
 - 수입물품 및 수출물품의 명세 및 HTSUS 8단위 품목번호
 - 제조환급 산출 방법
 - 환급신청의 근거가 되는 기록의 요약

- CBP는 신청서를 심사하여 관세환급 법 및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승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서와 승인서를 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에 등록함⁷⁶⁾
 - 또한 특정제조환급 결정에 고유한 제조 번호를 부여하여 승인서에 포함시키며, 이를 환급신청 시 사용해야 함

75) 미국 19 CFR 190.8

76) 미국 19 CFR 190.8

[그림 III-2] 미국 특정제조환급 결정 신청 양식 예시

II. FORMAT FOR APPLICATION FOR SPECIFIC MANUFACTURING DRAWBACK RULING UNDER 19 U.S.C. 1313(A) AND 1313(B) (COMBINATION).

COMPANY LETTERHEAD (Optional)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Entry Process and Duty Refunds, Regulations and Rulings, Office of Trade, 90 K Street NE—10th Floor (Mail Stop 1177), Washington, DC 20229-1177.

Dear Sir or Madam: We, (Applicant's Name), a (State, e.g., Delaware) corporation (or other described entity) submit this application for a specific manufacturing drawback ruling that our manufacturing operations qualify for drawback under title 19, United States Code, §§1313(a) & (b), and part 190 of the CBP Regulations. We request that CBP authorize drawback on the basis of this application.

NAME AND ADDRESS AND IRS NUMBER (WITH SUFFIX) OF APPLICANT

(Section 190.8(a) of the CBP Regulations provides that each manufacturer or producer of articles intended for exportation with the benefit of drawback must apply for a specific manufacturing drawback ruling, unless operating under a general manufacturing drawback ruling under §190.7 of the CBP Regulations. CBP will not approve an application which shows an unincorporated division or company as the applicant (see §190.8(a)).)

LOCATION OF FACTORY

(Provide the address of the factory(s) where the process of manufacture or production will take place. Indicate if the factory is a different legal entity from the applicant, and indicate if operating under an Agent's general manufacturing drawback ruling.)

PERSONS WHO WILL SIGN DRAWBACK DOCUMENTS

(List persons legally authorized to bind the corporation who will sign drawback documents. Section 190.6 of the CBP Regulations permits only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secretary, treasurer, and any employee legally authorized to bind the corporation to sign for a corporation. In addition, a person within a business entity with a customs power of attorney for the company may sign. A customs power of attorney may also be given to a licensed customs broker. This heading should be changed to Names of Partners or Proprietor in the case of a partnership or sole proprietorship, respectively (see footnote at end of this sample format for persons who may sign applications for specific manufacturing drawback rulings).)

자료: 미국 19 CFR Part 190 Appendix B

- 특별제조환급 결정의 승인통지서는 기한 없이 유효함⁷⁷⁾
 - 다만 다음의 경우 승인통지서의 효력은 종료됨
 - 결정에 따른 환급이 5년 이내에 신청되지 않고, 세관 공보에 그 종료 통지가 게시된 경우

77) 미국 19 CFR 190.8

- 결정의 승인을 발급받은 제조자 또는 생산자가 결정의 종료를 CBP에 결정의 종료 요청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3) 관세환급의 신청

- 수출자는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조자, 생산자, 수입자 또는 중간 당사자에게 증명서를 통해 환급 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음⁷⁸⁾
 - 이 증명서는 수출자가 환급을 신청하거나 신청할 예정이 아니며, 신청인 외의 다른 당사자에게 환급청구권을 양도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야 함
 - 수출자가 아닌 당사자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명서는 기재된 기간을 포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환급신청은 신청 물품이 수입된 후 5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환급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⁷⁹⁾
 - 기간 내 환급신청을 하지 못한 책임이 CBP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은 연장되지 않음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주요 재해로 인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CBP에게 입증한 경우 환급신청 기간은 18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음⁸⁰⁾
 - 이 경우 환급신청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한 연장 요청을 제출해야 함

- 수입물품 또는 대체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인은 재료명세서(Bill of Material, BOM) 또는 제조법(formula)을 구비하고,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함⁸¹⁾

78) 미국 19 CFR 190.28

79) 미국 U.S.C. 19 제1313조 제r항

80) 미국 U.S.C. 19 제1313조 제r항

81) 미국 U.S.C. 19 제1313조 제b항; 19 CFR 190.29

- BOM 또는 formula란 제조 또는 생산물품에 포함된 각 구성요소를 식별하거나 각 요소·재료·화합물·혼합물·기타 물질의 양을 식별하는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 보관되는 기록으로 다음의 사항이 확인 가능해야 함
 - 수입 또는 대체물품, 수출물품의 HSTUS 8단위
 - 수입 또는 대체물품, 수출물품의 수량

나. 미사용 물품의 관세환급

1) 관세환급의 요건

- 수입 시 관세, 내국세, 수수료를 납부한 수입물품이 수입 후 5년 이내에 환급이 신청되기 전에 사용되지 않고, 수출되는 경우 관세환급이 허용됨⁸²⁾
- 제로물품 관세환급 규정에 따른 제조 또는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의 작업 또는 이들의 결합작업의 이행은 물품의 사용으로 보지 않음
 - 시험, 세척, 재포장, 조사, 분류, 재처리, 냉동, 혼합, 수리, 재작업, 절단, 재단, 조정, 구성요소의 재배치, 표지 재부착, 분해, 포장 분리
 - 다만 이러한 작업이 사용으로 보지 않는 작업에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님
- 또한 수입물품과 동일한 HTS 8단위 물품이 수입물품이 수입된 후 5년 이내에 환급이 신청되기 전에 사용되지 않고, 수출되는 경우 환급이 허용됨⁸³⁾
- 이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환급 신청인이 수출물품을 임차, 임대, 운송, 기타 방법으로 통제하는 것을 포함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함
 - 수입물품의 수입자
 - 수입물품, 동일 8단위 물품 또는 이들 물품의 결합물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물품의 수입자로부터 수령한 자

82) 미국 U.S.C. 19 제1313조 제1항

83) 미국 U.S.C. 19 제1313조 제2항

- 이러한 물품의 양도는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의 기록에 의해 증명될 수 있으며, 별도의 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음
 - 다만 포도주는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색이 동일하고 가격의 차이가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환급이 허용됨
- 그러나 수입물품이 분류되는 HTS 8단위 호의 용어가 기타로 시작하는 경우 8단위가 동일한 물품은 수입물품을 대체할 수 없음⁸⁴⁾
- 다만 수입물품과 대체물품의 HTS 10단위 통계기록 번호가 동일하고, 10단위 호의 용어가 기타로 시작하지 않는 경우 대체환급이 가능함
- 한편 수입물품을 사용하지 않고 수출되는 경우 환급되는 금액은 수입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 내국세, 수수료의 99%를 초과할 수 없음⁸⁵⁾
- 수입물품에 납부된 관세는 승인된 회계방법에 따라 식별된 물품의 각 단위에 실제로 부과된 관세, 내국세, 수수료임⁸⁶⁾
- 반면 대체물품이 수출물품의 제조 또는 환급에 사용된 경우 환급금액은 단위당 평균관세에 따라 결정됨⁸⁷⁾
- 단위당 평균관세로 산출된 환급금액은 다음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9%를 초과할 수 없음
 -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내국세, 수수료
 - 대체물품이 수입된 경우 부과될 관세, 내국세, 수수료
 - 또한 내국세는 대체물품에 부과된 내국세 금액으로 제한하여 환급됨

84) 미국 U.S.C. 19 제1313조 제1항

85) 미국 U.S.C. 19 제1313조 제1항

86) 미국 19 CFR 190.51

87) 미국 U.S.C. 19 제1313조 제1항; 19 CFR 190.32

2) 관세환급의 신청

- 수입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신청은 수출자가 할 수 있으나, 수출자는 환급청구권을 포기하고 수입자 또는 중간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⁸⁸⁾
 - 환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신청인은 신청인 외의 다른 당사자에게 환급청구권을 양도하지 않을 것임이 기재되고, 수출자가 서명한 환급청구권 포기증명서를 확보하여 보관해야 함
 - 수출자가 아닌 당사자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명서는 기재된 기간을 포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대체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가 수입물품을 수입한 경우 수출자가, 수입자가 수입물품, 대체물품 또는 이들의 결합물품을 양도한 경우 수출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⁸⁹⁾
 - 수입자가 양도한 물품을 추가로 양도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과정에서 보관되는 기록에 따라 문서화된 경우 수출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수출자는 환급청구권을 포기하고 수출 전에 대체물품을 소유하였던 수입자, 중간 당사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 환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신청인은 신청인 외의 다른 당사자에게 환급청구권을 양도하지 않을 것임이 기재되고, 수출자가 서명한 환급청구권 포기증명서를 확보하여 보관해야 함
 - 수출자가 아닌 당사자가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명서는 기재된 기간을 포괄하여 사용할 수 있음

- 환급신청인 또는 수출자는 미사용 물품 환급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CBP가 수출물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수출 의향통지서를 CBP에 제출해야 함⁹⁰⁾
 - 의향통지서는 물품을 검사할 항구에 최소한 수출되기 5 업무일 전에 제출되어야 함

88) 미국 19 CFR 190.33

89) 미국 19 CFR 190.33

90) 미국 19 CFR 190.35

- 의향통지서는 물품이 수출되기 전에 미국에서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며, 선하증권번호, 연락 가능한 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팩스번호·메일주소, 물품의 위치를 포함해야 함
- CBP는 의향통지서를 수취한 후 2 업무일 이내에 수출물품에 대한 검사 여부에 대한 결정을 통지서에서 지정된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⁹¹⁾
 - CBP가 기간 내에 지정된 자에게 서면으로 검사 결정을 통지했으나 물품이 검사를 위해 CBP에 제시되지 않고 수출된 경우 관세환급 신청은 거절됨
 - CBP가 기간 내에 지정된 자에게 서면으로 검사 포기 결정을 통지하거나 검사 여부에 대한 결정을 기간 내에 통지하지 못한 경우 물품은 지체 없이 수출될 수 있음
- CBP가 기간 내에 수출물품의 검사 결정을 통지한 경우 당해 물품은 신속하게 CBP에 제시되어야 함⁹²⁾
 - CBP는 물품이 제시된 후 5일 이내에 검사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 당해 물품은 검사 없이 수출될 수 있음

2. 일본

가. 수출물품의 제조용 원료품의 감세, 면세 또는 환급

1) 감세, 면세 또는 환급의 요건

- 특정 원료품을 수입하여 지정 공장에서 제조한 제품이 수출되는 경우 그 관세를

91) 미국 19 CFR 190.35

92) 미국 19 CFR 190.35

경감 또는 면제하거나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함⁹³⁾

-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하거나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는 수출물품과 그 수입원료품은 내각에서 시행령(政令)⁹⁴⁾으로 정함
- 수입원료품을 제조하는 공장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또한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경우 원료품의 수입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품이 수출되어야 함

□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물품은 <표 III-1>의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수입원료품이며, 감세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로 관세율을 경감함⁹⁵⁾

-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경우 세관장은 그 경감 또는 면제에 관계되는 관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⁹⁶⁾

93) 일본 「관세정률법」 제19조

94) 일본에서 정령(政令)이라고 표현하나 우리나라의 시행령과 상응하므로 시행령이라고 기술함

95)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47조

96) 일본 「관세정률법」 제19조

〈표 Ⅲ-1〉 일본 수출물품의 제조용 원료품의 감면세 대상

(단위: %)

구분	수출물품	수입원료품	경감 관세율
면제	납 및 안티몬을 이용한 합금제품 - 라이터 세트, 재떨이, 담배 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흡연용품 - 설탕 용기, 밀크 세트, 빵 접시, 기타 이와 유사한 식탁용품 - 꽃병, 벽걸이 장식품, 기타 이와 유사한 실내장식용품 - 잉크병, 페이퍼 나이프, 문진, 기타 이와 유사한 문방구류 - 브로치, 펜던트, 기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신변장식용품 - 마리아상, 십자가, 기타 이와 유사한 종교용품 - 완구류 - 탁상시계용 받침대 - 스탠드, 스위치 커버, 기타 이와 유사한 조명기구 또는 전기장비 - 스프레이, 손거울, 분 케이스, 기타 이와 유사한 화장용품	납(합금 제외) 덩어리	-
	어패류의 통조림, 병조림 또는 항아리 조림	면실유	-
	글루타민산 소다	대두유 찌꺼기, 마니오카 전분, 기타 전분 또는 당밀	-
	정제당, 얼음 설탕, 각설탕	설탕	-
	전분 캐러멜, 설탕 캐러멜	마니오카 전분, 기타 전분 또는 설탕	-
	리신	당밀	-
	정제포도당	마니오카 전분, 기타 전분 또는 감자 전분	-
	이 외에 사용 원료품의 제조수율 등의 면에서 사용 원료품의 종류 및 수량이 명확한 수출물품이고, 그 수출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보세공장에서 제조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	당해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수입원료품으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것	-
경감	글루타민산 소다	소맥분	12.5
	비타민 C 및 그 유도체(함유량이 전체 중량의 95% 이상인 제제를 포함)	마니오카 전분, 기타 전분 또는 감자 전분	2.5
	결정포도당	마니오카 전분, 기타 전분 또는 감자 전분	2.5
	에리소르빈산 및 그 유도체	마니오카 전분, 기타 전분 또는 감자 전분	2.5

자료: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47조; 「관세정률법 시행규칙」 제9조

- 세관장은 관세의 경감 또는 면제를 받은 원료품에 의한 제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종의 다른 원료품의 혼합 사용을 승인할 수 있음⁹⁷⁾
 - 이 경우 수출물품 제조용 원료품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과 등질의 제품을 제조하여 수입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한 경우 당해 수출물품의 제조에 필요한 수량의 수입원료품이 제조에 사용된 것으로 봄

- 한편 물품이 수출된 경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원료품은 과실의 통조림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설탕임⁹⁸⁾
 - 과실의 통조림이란 다음의 것을 말함⁹⁹⁾
 - 과실, 잼, 마멀레이드
 - 과즙, 청량음료수, 유산음료
 - 토마토 케첩
 - 야채를 캔, 병, 통 기타 용기에 넣은 것
 - 리큐르
 - 가당분유, 가당연유
 - 얼음 설탕
 - 과자(제과점 제품 포함)
 - 아마넛토 및 누에콩
 - 단팥죽, 팥떡 및 삶은 팥
 - 단 과실주
 - 시럽류
 - 전체 중량의 100분의 40 이상의 자당을 함유하는 것
 - 수입원료품에 대하여 환급하는 관세액은 건조상태에서 전체 중량에 대한 자당의 함유량을 검당계로 측정한 수치에 따라 달라짐
 - 98.5도 이상인 설탕은 과실의 통조림 등 중에 포함되는 자당의 양과 같은 양

97) 일본 「관세정률법」 제19조

98)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2조

99)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2조; 「관세정률법 시행규칙」 제10조

의 설탕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의 전액

- 98.5도 미만인 설탕은 과실의 통조림 등 중에 포함되는 자당의 양의 95분의 100 까지의 양의 설탕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의 전액

- 관세가 감면 또는 환급되는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제조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승인을 신청해야 함¹⁰⁰⁾
 - 제조공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조공장의 명칭, 소재지, 승인 기간, 원료 품명, 제조방법, 제조품명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조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 제출해야 함
 - 다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관세를 면제받는 물품의 경우 수입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제조공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조공장별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장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함
 - 제조공장에 반입된 제조용 원료품의 품명 및 수량, 그 반입 연월일 및 그 수입허가에 관계되는 세관, 수입허가 연월일 및 번호
 - 제조용 원료품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그 부산물의 품명, 수량 및 그 제조연월일
 - 제조공장에서부터 반출된 제조용 원료품, 제품 또는 그 부산물의 품명과 수량, 반출한 장소 및 연월일
 - 관세의 경감 또는 면제를 받은 자는 장부에 추가로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함
 - 사용한 제조용 원료품의 품명, 수량 및 그 사용 연월일
 - 제조완료 신고 후 검사받은 제품 또는 그 부산물의 품명, 수량 및 그 검사 연월일
 - 제조공장에서 멸실 또는 폐기된 제조용 원료품, 제품 또는 그 부산물이 있는 때에는 그 품명, 수량 및 멸실 또는 폐기된 연월일, 장소 및 사유

□ 세관장은 수출물품 제조용 원료품을 기한 내에 수출하지 않거나 수출 외의 용도로

100)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49조; 제53조

-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경감 또는 면제 받은 관세를 즉시 징수함¹⁰¹⁾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에게 경감 또는 면제받은 관세를 징수함
 - 수입허가일부터 2년 이내에 수출 이외의 용도에 제공 또는 수출 이외의 용도에 제공하기 위한 양도를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때
 - 수입허가일부터 2년 이내에 세관장의 승인 없이 수출 이외의 목적에 제공하였거나 수출 이외의 목적에 제공하기 위해 양도한 때
 - 수입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한 제조용 원료품 및 그제품의 수량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그 제품을 수출하지 않은 때
 -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제조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수출물품 제조용 원료품을 제조에 제공한 때
 - 세관장의 승인 없이 동종의 다른 원료품을 혼용하여 사용한 때
 - 다만 제조용 원료품 또는 그 제품이 재해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 그 관세를 징수하지 않음

2) 감세, 면세 또는 환급의 신청

가) 감세 또는 면세의 신청

- 관세를 경감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경감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원료품의 수입신고 시에 수출물품 제조용 원료품 감면세 명세서를 그 수입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¹⁰²⁾
 - 수출물품 제조용 원료품 감면세 명세서에는 경감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원료품의 품명 및 수량, 제품의 품명 및 예정 수량, 제조공장의 명칭 및 소재지, 원료품을 장치하는 장소 및 제조기간이 기재됨
 - 원료품의 수입신고는 제조공장 승인을 받은 제조자의 이름으로 해야 함

101) 일본 「관세정률법」 제19조

102)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49조;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19-2

- 수출물품 제조용 원료품에 의한 제도가 종료된 때에는 당해 제도를 한 자가 사용한 원료품 및 제품의 수량을 세관에 신고하고 제품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함¹⁰³⁾
 - 제조완료 신고는 제조공장의 소재지의 세관에 하여야 하며, 세관은 신고에 의해 검사를 한 때에는 제품검사서를 그 신고를 한 자에게 교부함¹⁰⁴⁾
- 수출물품 제조용 원료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기한 내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그 수출신고 시에 당해 원료품의 수입허가서 및 제품검사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¹⁰⁵⁾
 - 세관장은 물품이 수출된 때 수입허가서에 수출되었다는 것을 기재하여 수출신고를 한 자에게 교부함

나) 환급의 신청

- 관세를 환급받는 수출물품의 제조용 연료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 시에 물품제조보고서를 수출신고서에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¹⁰⁶⁾
 - 세관장은 물품의 수출허가를 한 때에는 물품제조보고서에 수출허가가 있었음을 표시하여 그 수출신고를 한 자에게 교부함
 - 또한 물품이 수출이 된 때에 물품제조보고서를 제시받아 수출되었다는 것을 기재한 후 수출신고를 한 자에게 환부함
-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수출자 또는 제조자는 매회계년도의 각 사분기의 말일의 다음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의 기간 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함¹⁰⁷⁾
 - 이 경우 당해 사분기에 수출한 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원료품에 대한 관세를 환

103) 일본 「관세정률법」 제19조

104)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49조

105)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1조

106)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3조의2

107)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3조의3

급받는 것으로 하고 품목별로 신청서를 제출함

- 신청서는 수출을 허가한 세관장 또는 수출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조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조공장 또는 제조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함
- 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수출 사실이 표시된 물품제조보고서와 원료품의 수입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함
 - 환급을 받고자 하는 관세액 및 그 산출의 근거
 - 당해 사분기에 수출한 물품 및 그 물품의 제조에 사용한 원료품의 품명 및 수량

나. 수입 시와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되는 물품의 환급

-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된 물품 중 수입 시에 수입 시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은 것을 수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하는 경우 그 관세를 환급할 수 있음¹⁰⁸⁾
 - 수입 시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은 것이란 수입 시의 품질, 규격, 형상 등이 그 수출 시에 동일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은 것을 말함¹⁰⁹⁾
 - 사용이란 시험적 사용 등의 경미한 것은 포함되지 않음
 - 이 경우 관세의 환급액은 수출을 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의 전액임¹¹⁰⁾
- 환급을 받고자 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재수출물품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함¹¹¹⁾
 - 물품확인신청서에는 환급을 적용받고자 한다는 것, 물품의 재수출 예정 시기 및 예정지, 물품의 성질 및 기타 재수출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함
 - 세관장은 물품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물품의 성질 및 형상을 확인하고 당해 신청서에 그 확인을 하였다는 것을 기재하여 이를 환부함

108) 일본 「관세정률법」 제19조의3
 109) 일본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19의3-1
 110)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4조의15
 111) 일본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4조의13;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19의3-2

- 물품을 수입허가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1년을 초과하여 재수출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음¹¹²⁾
 - 부득이한 이유란 수입물품의 회수에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경우, 수입물품 중 국내에서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정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경우 등을 말함
 -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물품의 수입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당해 물품의 수입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

- 관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 시에 신청서, 재수출물품확인 신청서, 수입허가서를 첨부하여 수출신고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¹¹³⁾
 - 환급신청서에는 수출물품의 품명, 수량 및 수출의 이유를 기재함

3. 호주

가. 관세환급(Drawback)

1) 관세환급의 요건

- 호주 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는 수입물품 또는 수입물품을 가공·처리·결합한 물품이 수출된 경우 수출자에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함¹¹⁴⁾
 - 물품 및 서비스세(Goods and Services Tax)는 수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수입관세에 포함되지 않음
 - 반면 수입관세에는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납부된 덤핑방지관세가 포함됨¹¹⁵⁾

112) 일본 「관세정률법」 제19조의3,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4조의13; 「관세정률법 기본통달」 19의 3-1

113) 「관세정률법 시행령」 제54조의16

114) 호주 국경수비대,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exporting/duty-drawback-scheme>, 검색일자: 2021. 2. 5.

- 수입관세를 납부한 수입물품이 호주에서 검사·전시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수출된 경우 수입관세가 환급될 수 있음¹¹⁶⁾
 - 다만 다음의 경우 수입관세는 환급되지 않음¹¹⁷⁾
 - 수출 시 물품의 FOB 가격이 수입 시에 결정된 과세가격의 25% 미만인 경우
 - 수입관세가 이미 환급된 경우
 - 연료가 수출되는 경우 연료세(fuel tax) 공제 또는 경감 자격이 있는 법인이 인상 조정되지 않거나 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 또한 수입물품이 호주에서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수출물품의 생산을 위해 가공·처리된 경우 수입관세가 환급될 수 있음¹¹⁸⁾
 - 제조에는 물품을 포장하는 과정 또한 포함되며, 제조과정에서 사용·손실·폐기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관세도 환급될 수 있음
 - 다만 제조 또는 가공·처리물품이 호주에서 검사·전시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수입관세가 이미 환급된 경우 수입관세는 환급되지 않음

- 이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이 호주에서 생산된 물품과 혼합되어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되거나 생산을 위해 가공·처리된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간주되는 금액이 환급될 수 있음¹¹⁹⁾
 - 환급금액은 호주 생산품과 혼합된 물품에 포함된 수입물품에 대해 납부한 수입관세와 수출물품의 제조 또는 가공·처리 외에 사용·손실·폐기된 혼합 물품의 양을 고려하여 정함

115) 호주 Customs (International Obligations) Regulation 2015 제33조

116) 호주 Customs (International Obligations) Regulation 2015 제34조

117) 호주 Customs (International Obligations) Regulation 2015 제36조

118) 호주 Customs (International Obligations) Regulation 2015 제35조

119) 호주 Customs (International Obligations) Regulation 2015 제41조

2) 관세환급의 방법

- 수출물품에 대해 환급될 수 있는 수입관세의 금액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납부했던 관세를 초과할 수 없음¹²⁰⁾
 -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납부한 관세는 다음을 말함
 - 수입물품을 수출한 경우 납부한 관세
 -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제조에 사용된 수입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
 - 수입물품을 가공·처리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 가공·처리된 수입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

- 환급금액은 자체평가를 기초로 청구되며, 자체평가는 선적건별 기준, 대표 또는 평균 선적 기준, 전가방법의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환급금액을 산출함¹²¹⁾
 - 선적건별 기준은 수출과 수입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경우 사용함
 - 대표 또는 평균 선적 기준은 일반적으로 거대 증량의 저가물품에 사용되는 방법으로 동일물품의 가격의 전형적인 대표 표본이 특정 기간의 대표 선적으로 선택될 수 있음
 - 전가방법은 수출자가 물품의 수입자가 아니고 납부된 수입관세의 금액을 모르는 경우에 사용하며, 환급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¹²²⁾
 - 수입물품에 종량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환급금액 = 구매가격×0.3×수입관세율
 - 수입물품에 종량세가 적용되는 경우: 환급금액 = 종량세 적용 관세¹²³⁾+{(구매가격-종량세 적용 관세)×0.3×수입관세율}

120) 호주 Customs (International Obligations) Regulation 2015 제40조

121) 호주 국경수비대, <https://www.abf.gov.au/importing-exporting-and-manufacturing/exporting/duty-drawback-scheme>, 검색일자: 2021. 2. 5.

122) 호주 Customs (International Obligations) Regulation 2015 제40조

123) 물품의 실제 수량 또는 물품의 구성요소의 실제 수량을 기초로 계산된 수입관세를 말함

3) 관세환급의 신청

-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세관공무원이 합리적인 시간에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¹²⁴⁾
 - 또한 물품에 대해 납부한 수입관세에 관한 기록, 소유자가 물품을 수령·처분한 세부사항을 보여주는 기록을 세관공무원이 합리적인 시간에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물품을 수출하는 때의 소유자는 수출일부터 4년 이내에 관세환급을 신청해야 함¹²⁵⁾
 - 관세환급의 신청은 승인된 양식에 청구금액과 기타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와 청구금액을 포함하여 「관세법」에 따른 정보기술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으로 서명·전송되어야 함
 - 또한 환급신청에는 신청인이 최선의 인지·정보·신의를 바탕으로 물품이 호주에서 검사·전시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함

- 환급신청 금액은 최소 100호주달러여야 함¹²⁶⁾
 - 또는 물품 소유자가 다른 물품의 수출에 대한 환급을 동일한 양식으로 동시에 신청한 경우 당해 청구금액의 합이 최소 100호주달러여야 함

4) 관세환급의 제한

- 담배 및 담배제품을 수출하기 전 물품의 소유자는 수출에 대한 관세환급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도를 징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¹²⁷⁾
 - 통지를 받은 징수원은 물품 소유자에게 다음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할 수 있음¹²⁸⁾

124) 호주 Customs (International Obligations) Regulation 2015 제37조

125) 호주 Customs (International Obligations) Regulation 2015 제37조

126) 호주 Customs (International Obligations) Regulation 2015 제37조

127) 호주 Customs (International Obligations) Regulation 2015 제37조

128) 호주 Customs (International Obligations) Regulation 2015 제38조

- 물품 수출 전 세관공무원의 검사를 위한 물품의 생산
 - 세관공무원의 입회하에 수출하려는 포장용품으로의 물품 포장, 다만 소매용으로 포장되거나 포장 없이 수출되는 경우는 제외함
 - 수출하려는 포장용품으로 포장한 후 세관공무원이 만족할 정도의 물품 안전 확보
 - 수출을 위해 포장한 물품의 각 포장용품에 고유한 표시 또는 라벨 부착
 - 포장되지 않고 수출되는 물품에 고유한 라벨 부착
- 징수원은 물품의 소유자가 이러한 요구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수출에 대한 수입 관세를 환급하지 않음
- 담배 및 담배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 시의 물품 소유자는 수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¹²⁹⁾
- 환급신청에는 신청인이 최선의 인지·정보·신뢰를 바탕으로 물품이 다시 호주에서 재하역되지 않을 것을 확인하는 진술이 포함되어야 함

나. 무역수출면세제도(Tradex Scheme)

- 무역수출면세제도(Tradex Scheme)는 물품을 추후에 수출하는 수입자에게 현금흐름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관세와 물품 및 서비스세를 사전에 면세해 주는 제도임¹³⁰⁾
-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물품을 수입하기 전에 Tradex Order를 받아야 하며, 이미 수입된 물품에는 Tradex Order를 사용할 수 없음
- Tradex Order는 Tradex Order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수입 후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적격물품에 한함¹³¹⁾
- Tradex Order를 받을 수 있는 자란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함

129) 호주 Customs (International Obligations) Regulation 2015 제37조

130) 호주 business.gov.au, <https://www.business.gov.au/Grants-and-Programs/Tradex-Scheme>, 검색일자: 2021. 2. 8.

131) 호주 Tradex Scheme Act 1999 제4조; 제5조

- 개인의 경우 행정상 파산한 자
- 법인의 경우 외부의 관리를 받는 법인
- 파트너십의 경우 파트너 중 누구라도 행정상 파산한 경우
- 적격물품이란 다음 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말함
 - 관세 및 기타 제세가 면제되는 판매용 물품을 제공하는 시설에 판매되는 물품
 - 당해 물품이 호주에서 생산되었다면 소비세 대상이 됐을 물품
- Tradex Order를 신청 또는 변경 신청하거나 보유한 Tradex Order를 유지하기 위하여 핵심기준을 충족해야 함
 - 신청 또는 변경 신청을 위한 핵심기준은 다음과 같음
 - 신청인이 신청서에 지정한 물품을 추후 수출하기 위하여 수입할 예정이어야 함
 - 당해 물품이 호주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함
 - 당해 물품이 수입 후 1년 이내에 수출되어야 함
 - 당해 물품이 수출될 때까지의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회계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Tradex Order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을 위한 핵심기준을 충족하는 것 외에 Tradex Order에서 지정된 물품을 수입하여 수출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이를 계속 수입한 후 수출할 예정이어야 함
- 특정 종류 또는 품명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과 관련된 Tradex Order를 신청할 수 있음¹³²⁾
 - 신청서는 승인된 양식에 신청 물품의 종류와 품명 및 기타 양식에서 요구한 정보를 포함하고, 신청인이 서명하여 산업혁신과학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장관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신청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¹³³⁾
 - 신청이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된 물품에 대한 Tradex Order를 발행함

132) 호주 Tradex Scheme Act 1999 제10조

133) 호주 Tradex Scheme Act 1999 제11조

- 지정된 물품과 관련하여 핵심기준을 준수해야 함
 - 신청인이 Tradex Order를 신청할 자격이 있어야 함
 - 신청인이 허위 또는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정보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야 함
 - 신청인이 보유한 다른 Tradex Order에 따라 납부해야 할 관세를 납부해야 함
 - 장관의 통지를 기한 내에 받지 못한 경우 당해 신청은 거절된 것으로 간주함
- Tradex Order에는 장관이 서명해야 하며, Tradex Order에 명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함¹³⁴⁾
- Tradex Order를 발행한 장관은 다음의 사항을 이행해야 함
 - 식별번호, 즉 Tradex Number를 할당해야 함
 - 등록부에 Tradex Order의 상세사항 및 Tradex Number를 기록해야 함
 - 할당된 Tradex Number, 발효일, Tradex Order가 적용되는 지정된 물품을 기재한 결정통지를 해야 함
- Tradex Order에 지정된 물품이 규정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Tradex Order 보유자는 면제받은 관세를 납부해야 함¹³⁵⁾
-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 물품을 보유자가 호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한 경우
 - 물품을 호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할 다른 이에게 보유자가 처분 또는 거래한 경우
 - 물품과 관련하여 규정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물품을 수출이행 기간 내에 수출하지 않은 경우
 - 면제된 관세는 다음의 날 중 가장 빠른 날부터 28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물품을 소비 또는 사용한 날
 - 물품을 처분 또는 거래한 날

134) 호주 Tradex Scheme Act 1999 제11조

135) 호주 Tradex Scheme Act 1999 제21조

- 물품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날
 - 수출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
- Tradex Order에 지정된 물품이 수입된 경우 Tradex Order 보유자는 관련 기록을 물품에 대해 마지막 행위가 행해진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함¹³⁶⁾
- 기록은 호주 내에 보관되어야 하며, 영어로 작성된 서면형태여야 함
 - 영어 문서로 쉽게 전환할 수 있는 전자양식 등 다른 형태로 보관할 수 있음
- 보관해야 하는 기록은 수입물품의 모든 세부사항과 Tradex Order 보유자에 의해 물품에 대해 이루어진 후속거래 등 모든 행위를 포함해야 함¹³⁷⁾
- 수입물품의 세부사항이란 다음의 행위를 포함해야 함
 -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의 결합
 - 보유자가 수입물품 또는 결합된 물품을 점유·보관·소유하는 동안의 보관
 - 보유자가 수입물품 또는 결합된 물품을 소비 또는 사용한 경우 그 소비 또는 사용
 - 수입물품 또는 결합된 물품의 수출
 -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면제된 관세의 납부
 - 기타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4. 캐나다

가. 수입 및 수출물품 면세

1) 면세의 요건

- 수입물품을 지정된 기간 내에 수출하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할 관세의

136) 호주 Tradex Scheme Act 1999 제22조; 제23조

137) 호주 Tradex Scheme Act 1999 제22조

지급이 면제될 수 있음¹³⁸⁾

- 관세의 면제란 관세뿐 아니라 덤핑방지 및 상계 관세, 물품 및 서비스세(GST)를 제외한 소비세를 물품 수입 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함¹³⁹⁾
- 반면 소비세가 부과되는 담배와 그 제품은 관세 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물품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해야 함¹⁴⁰⁾

- 수입된 때와 다음과 같이 동일한 상태¹⁴¹⁾로 수출되는 물품
 - 수입 후 CUSMA 협정 제2.5조에 따른 최소 공정만을 수행한 것으로 물품의 특성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 전시나 시연, 수출물품의 개발이나 생산(플랜트 장비 제외)에 사용된 경우
 - 재사용이 가능한 컨테이너로 물품의 국제운송에 사용된 경우
- 캐나다에서 가공된 후 수출되는 물품
 - 가공이란 조정, 개조, 조립, 제조, 변경, 생산 또는 수리를 포함함¹⁴²⁾
- 캐나다에서 수출물품을 가공하는 때에 직접 소비 또는 투입되는 물품
- 수입물품과 동종의 내국 또는 수입물품이 동일한 양으로 캐나다에서 가공된 후 수출되는 경우, 그 수입물품
 - 동종의 물품이란 캐나다에서 물품을 가공하는 때에 상호 대체 사용하거나 물품을 가공하는 때에 상호 대체되어 직접 소비 또는 투입되는 물품을 말함¹⁴³⁾
- 수입물품과 동종의 내국 또는 수입물품이 동일한 양으로 캐나다에서 수출물품을 가공하는 때에 직접 소비 또는 투입되는 경우 그 수입물품

□ 그러나 관세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물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되지 않음¹⁴⁴⁾

138) 캐나다 「관세율법」 제89조

139) 캐나다 D-Memorandum D7-4-1 Duties Relief Program

140) 캐나다 「관세율법」 제89조

141) 캐나다 Duties Relief Regulations 제9조

142) 캐나다 「관세율법」 제80조

143) 캐나다 Duties Relief Regulations 제10조

- 물품이 수출되기 전에 손상된 경우
- 캐나다에서 수출물품을 가공하는 때에 직접 소비·투입된 수입물품이나 동종의 내국 또는 수입물품이 연료 또는 플랜트 장비인 경우
- 수입물품과 동종의 내국 또는 수입물품이 가공되거나 가공에 직접 소비·투입된 다음의 경우
 - 수입물품이 캐나다에서 증류주의 가공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거나 증류주를 가공하는 데에 직접 소비·투입되는 증류주인 경우
 - 수입물품과 동종의 내국 또는 수입물품이 가공되거나 가공에 직접 소비·투입된 후 수입물품이 가공 또는 소비·투입된 경우
 - 수입물품과 동종의 내국 또는 수입물품이 가공되거나 가공에 직접 소비·투입된 캐나다 내의 플랜트 외의 플랜트에서 수입물품이 가공되거나 가공에 직접 소비·투입된 경우
- 수입 및 수출물품의 관세면제 규정의 목적에 따라 다음의 경우 물품을 수출한 것으로 간주함¹⁴⁵⁾
 - 선박저장소로 운송되기 위하여 공급되는 경우
 - 다음의 선박 또는 항공기¹⁴⁶⁾의 장비, 수리 또는 재건에 사용되는 경우
 - 오직 국제무역으로만 운영되는 것으로 운영 중이거나 수리 또는 재건 중인 해양선박
 - 외국군함, 전신케이블 선박, 유람 목적의 외국 등록선박
 - 국제비행으로만 운영되는 항공기, 국제항공기
 - 어느 국가든 등록되어 있고, 해외에서 해양 전신케이블의 설치 및 수리에 사용되며 해외에서 항해 중인¹⁴⁷⁾ 전신케이블 선박에 공급되는 경우
 - 공공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캐나다 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소유, 통제 또는 운영

144) 캐나다 Duties Relief Regulations 제4조 내지 제6조

145) 캐나다 「관세율법」 제89조

146) 캐나다 Duties Relief Regulations 제11조, Schedule III

147) 캐나다 Duties Relief Regulations 제12조

하는 부처 또는 기관에 수출을 위해 공급되는 경우

- 수출 또는 선박저장소·선박 또는 항공기·전신케이블 선박에 공급하기 위해 보세 창고 또는 면세점에 반입되는 경우
 - 공공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수출물품 관세 면제 인증서를 받은 자가 인증서를 발급받은 다른 자에게 양도한 경우
 - 기타 수출로 간주된다고 규정된 방식으로 사용했거나 사용할 경우
- 관세가 면제되는 수입물품은 반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수출되어야 함¹⁴⁸⁾
- 다음의 수입물품은 반출된 날부터 4년 이내에 수출되어야 함
 - 수입된 때와 동일한 상태로 수출되는 것
 - 캐나다에서 가공된 후 수출되는 것
 - 수출물품을 캐나다에서 가공하는 때에 직접 소비 또는 투입되는 것
 - 캐나다에서 가공된 후 수출되는 증류주, 포도주, 맥주는 반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출되어야 함
 - 수입물품과 동종의 내국 또는 수입물품이 캐나다에서 가공되거나 가공에 직접 소비·투입된 경우 수입물품이 반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출되어야 함

2) 면세의 신청

- 공공안전부 장관은 관세의 면제 신청의 자격이 있는 물품의 수입자, 수출자, 가공업자, 화주, 생산자에게 번호가 매겨진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음¹⁴⁹⁾
- 물품이 캐나다로 직접 운송된 시점부터 수출 또는 수출로 간주된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수입자 등을 말함
- 관세 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가까운 캐나다 국경보안청(Canada Border

148) 캐나다 Duties Relief Regulations 제7조

149) 캐나다 「관세율법」 제90조, Duties Relief Regulations 제3조

Services Agency, CBSA) 사무소에 관세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¹⁵⁰⁾

- 신청서에는 CBSA에서 심사하기에 충분한 물품의 영수·활동·이동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의 유지를 보장해야 함
 - CBSA는 신청서를 검토하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수입물품이 캐나다에 머무르는 동안 추적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록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함
 - CBSA가 신청서를 승인하는 경우 고유한 인증번호를 신청인에게 발급함
- 유효한 인증서 번호를 물품이 관세의 납세신고를 하는 때에 제시한 경우, 당해 물품은 관세의 납부 없이 반출할 수 있음¹⁵¹⁾
- 인증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청인은 물품이 다음과 같은 때까지 물품에 대한 책임이 있음¹⁵²⁾
 - 물품을 다른 관세 면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양도한 때
 - 물품을 캐나다에서 수출한 때
 - 물품을 더 이상 수출하지 않아 관세를 납부한 때
 - 물품의 관세 면제 자격 지위가 재분류된 때
 - 물품이 다른 면제 프로그램으로 이전된 때
 - 물품이 폐기된 때
 - 인증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인증을 받기 전에 관세를 납부한 재고품이 캐나다에서 수출된 경우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나. 수입 및 수출물품 환급

1) 환급의 요건

- 수입 및 수출물품 면세 규정에 따라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었으

150) 캐나다 D-Memorandum D7-4-1 Duties Relief Program

151) 캐나다 「관세율법」 제90조, Duties Relief Regulations 제3조

152) 캐나다 D-Memorandum D7-4-1 Duties Relief Program

나 관세를 납부한 경우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음¹⁵³⁾

○ 다만 「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와 그 제품에 부과된 관세는 환급되지 않음

□ 따라서 수입 및 수출물품 환급 규정에 따라 관세를 환급할 수 있는 수입물품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는 수입물품과 동일하며,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¹⁵⁴⁾

○ 수출되기 전에 손상되지 않아야 함

○ 수입물품 또는 동종의 내국 또는 수입물품이 가공 후 수출되거나 수출물품의 가공에 직접 소비·투입되는 경우 캐나다에서 수출되기 전에 전시·시연을 제외한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되지 않아야 함

○ 수입물품과 동종의 내국 또는 수입물품이 가공되거나 가공에 직접 소비·투입되는 경우 동종의 내국 또는 수입물품이 가공 또는 가공에 직접 소비·투입되는 캐나다 내의 플랜트에서 가공되거나 가공에 직접 소비·투입되어야 함

- 수입된 방직용 섬유를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추가로 섬유가공업자에 의해 가공되어야 함

□ 그러나 수입물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가 환급되지 않음¹⁵⁵⁾

○ 수입물품과 동종의 내국 또는 수입물품이 가공된 후 수출되는 경우, 수입물품이 가공되기 전에 내국물품이 가공된 경우

○ 수입물품과 동종의 내국 또는 수입물품이 가공에 직접 소비·투입된 경우, 수입물품이 가공에 직접 소비·투입되기 전에 내국물품이 가공에 직접 소비·투입된 경우

○ 캐나다에서 수출물품을 가공하는 때에 직접 소비·투입된 수입물품이나 동종의 내국 또는 수입물품이 연료 또는 플랜트 장비인 경우

○ 수입한 증류주·포도주·맥주와 동종의 내국 또는 수입물품을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 「관세율법」 제21.1조, 제21.2조에 따라 추가관세가 부과 또는 징수된 수입 별

153) 캐나다 「관세율법」 제113조

154) 캐나다 Goods Imported and Exported Refund and Drawback Regulations 제4조

155) 캐나다 Goods Imported and Exported Refund and Drawback Regulations 제14조; 제14.1조

크 증류주, 포장 증류주, 포장 포도주는 다음의 범위에 해당하는 세액의 경우

- 이전에 당해 관세와 관련된 자에게 「관세율법」 또는 기타 의회 법에 따라 환급, 송금, 신청, 지급된 세액
- 당해 관세와 관련된 자가 기타 의회 법에 따라 환급, 지급, 면제를 받은 세액

- 또한 수입물품 또는 수입물품이 가공되거나 가공에 직접 소비·투입된 수출물품은 환급이 신청되기 전에 수출되거나 수출로 간주되어야 함¹⁵⁶⁾
 - 다음의 수입물품은 반출된 날부터 4년 이내에 수출되어야 함
 - 수입된 때와 동일한 상태로 수출되는 것
 - 캐나다에서 가공된 후 수출되는 것
 - 수출물품을 캐나다에서 가공하는 때에 직접 소비 또는 투입되는 것
 - 수입물품과 동종의 내국 또는 수입물품이 캐나다에서 가공되거나 가공에 직접 소비·투입된 경우 수입물품이 반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출되어야 함

2) 환급의 신청

- 관세환급은 물품이 캐나다로 직접 운송된 때부터 수출 또는 수출로 간주되기까지 물품의 수입자, 수출자, 가공업자, 화주, 생산자가 신청할 수 있음¹⁵⁷⁾
 - 환급신청인은 환급신청인 외의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모든 자의 권리포기서를 제공해야 함¹⁵⁸⁾
 - 다만 수입된 증류주, 포도주, 맥주를 캐나다에서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오직 수입자만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¹⁵⁹⁾
- 관세환급은 수입물품이 반출된 후 4년 이내에 신청되어야 함¹⁶⁰⁾

156) 캐나다 Goods Imported and Exported Refund and Drawback Regulations 제4조; 제5조

157) 캐나다 Goods Imported and Exported Refund and Drawback Regulations 제9조

158) 캐나다 Goods Imported and Exported Refund and Drawback Regulations 제5조

159) 캐나다 Goods Imported and Exported Refund and Drawback Regulations 제9조

- 다만 수입된 증류주, 포도주, 맥주를 캐나다에서 가공 후 수출하는 경우 수입물품이 반출된 후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¹⁶¹⁾
- 또한 환급신청서에는 공공안전부 장관이 요구한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증명이 포함되어야 함¹⁶²⁾
 - 환급신청이 조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에는 수출서류와 수출판매 송장 사본이 포함됨¹⁶³⁾

5. 국제비교

- 「교토협약」에서 국내법령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해야 한다고¹⁶⁴⁾ 명시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주요국 모두 관세환급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주요국 모두 관세가 환급되는 수입 원재료에 수출물품의 제조·생산·가공에 사용되는 물품과 수입 시와 동일한 상태로 수출되는 수입물품 자체를 포함함
 - 그러나 수출물품을 직접 구성하거나 결합되지 않고, 수출물품의 생산 등의 과정에서 소비·투입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환급은 우리나라, 호주, 캐나다만이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 또한 「교토협약」에서 국내법령은 수입관세 및 제세를 납부한 물품이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동등물품으로 대체되었을 경우의 환급절차 적용에 관한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주요국 모두 동등물품에 대한 환급을 허용함¹⁶⁵⁾
 - 「교토협약」에 따르면 동등물품이라 함은 환급절차하에서 대체되는 물품과 성상,

160) 캐나다 「관세율법」 제113조

161) 캐나다 Goods Imported and Exported Refund and Drawback Regulations 제10조

162) 캐나다 「관세율법」 제113조

163) 캐나다 D-Memorandum D7-4-2 Duties Drawback Program

164) 「교토협약」 특별부석서 F 제3장 2. 표준

165) 「교토협약」 특별부석서 F 제3장 3. 권고관행

품질 및 기술적 특성이 동일한 내국 또는 수입물품을 말함¹⁶⁶⁾

-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요국은 수입물품을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동종의 물품, 상호 대체 가능하며 수출물품의 생산에 혼합하여 사용하는 물품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 반면 미국의 경우 수입물품과 동일한 HTS 8단위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이 수입물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관세법」 등을 2016년 개정하였음
-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는 관세환급이 되지 않는 품목을 규정하기도 하는데, 일본의 경우 환급이 가능한 품목만을 열거하여 그 외의 품목은 환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미국은 수입 밀, 캐나다는 담배에 대한 관세환급을 허용하지 않음
- 주요국은 이러한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생산된 물품의 수출기한을 정하여, 이를 경과할 경우 환급자격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수출신고 수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소급하여 수출이행 기간을 정함에 따라 수출 후에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환급도 가능함
 - 미국은 수입 후 5년 이내에, 캐나다는 수입 후 4년 이내에 생산물품을 수출하도록 하여 우리나라보다 수출이행 기간을 길게 규정하고 있음
 - 반면 일본은 원재료를 수입한 후 1년 이내에 제조물품을 수출해야 함
- 주요국 모두 환급금액은 실제로 수입물품에 대해 납부하였던 관세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호주는 미리 정한 금액을 환급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는 납부세액을 환급하는 방법 외에 중소기업체가 수출하는 일정 물품에 대하여 수출금액당 금액을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도 규정하고 있음
 - 호주 또한 선적 기준으로 실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하는 방법 외에 거래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을 환급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음

166) 「교토협약」 특별부석서 F 제3장 E3./F1.

- 반면 미국의 경우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에 편의를 주기 위하여 일부 품목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제조환급 결정을 공표하고 있음
- 이렇게 환급요건을 갖춘 물품에 대한 환급신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미국과 캐나다는 수입자와 수출자를 포함하여 물품의 수입과 수출 과정에서 물품을 소유, 구매, 판매, 양도, 양수 등을 했던 자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호주의 경우 수출 시에 물품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환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함
- 또한 주요국 모두 환급신청이 승인될 수 있는 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국가는 환급신청 기한을 수출이행 기한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는 수출 후 일정 기간 내에 환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과 캐나다는 수출이행 기한 내에 환급신청도 이루어져야 함
- 한편 일부 국가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한 후 환급하는 대신 수입 시에 관세를 사전에 감면해 주는 규정을 마련하기도 함
 - 일본은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를 면제 또는 경감해 주고 있는데, 이는 관세를 환급하는 품목과 별개의 물품에 대한 규정임
 - 호주와 캐나다 또한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관세를 면제해 주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의 경우 관세의 면제를 받지 못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환급을 받도록 하고 있음

〈표 III-2〉 주요국의 환급제도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환급조세	관세, 내국세 (부가가치세 제외)	관세, 내국세 (덤핑방지, 상계, 초과 할당관세 제외)	-	관세(GST 제외)	관세, 소비세 (덤핑방지, 상계관세 포함, GST 제외)
가공	○	○	○	○	○
가공에 소비·투입	○	-	-	○	○
대체물품	○ (동일한 질·특성)	○ (HTS 8단위 동일)	○ (동종의 물품)	○ (혼합 사용)	○ (동종의 물품)
수입물품	○	○	○	○	○
환급제의 품목	-	수입 밀	설탕 외의 물품	-	담배
환급제한·기타 요건	기간·물량 제한	미사용 물품 수출 전 통지	제조공장 승인	수출 FOB 가격 한도, 담배 수출 전 통지	대체물품 사용 시기·생산설비
수출이행 기간	수출 후 소급하여 2년 이내 수입한 물품	수입 후 5년 이내	수입 후 1년 이내	-	수입 후 4년 이내 (대체물품은 2년 이내)
환급방법	개별, 간이정액	일반제조, 특정제조 (납부세액 환급)	납부세액 환급	선적기준(납부세액 환급) 진가방법(일부 비율)	납부세액 환급
환급신청인	제조사, 수출자	수출자(수입자, 제조사, 생산자, 중간 당사자에게 양도 가능)	제조사, 수출자	수출 시 소유자	수입자, 수출자, 가공업자, 화주, 생산자
환급신청기간	수출 후 2년 이내	수입 후 5년 이내	수출한 분기의 말일의 다음날부터 2개월 내	수출 후 4년 이내	수입 후 4년 이내
사전감면	×	×	○ (환급대상 물품과 별도) (수입 후 2년 내 수출)	○ (GST 포함, 수입 후 1년 내 수출)	○

자료: 저자 작성

IV. 중소기업의 관세환급제도 활용 제고

- 앞서 우리나라의 관세환급제도 운용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10년간 관세 환급은 건수, 금액, 적용 업체 수 모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2012년에 5조 1,469억원을 1만 7,391개 업체가 환급받아 금액 및 업체 수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며 2020년에는 2조 6,796억원을 1만 3,380개 업체가 환급받았음

- 또한 최근 5년간 수출 대비 관세환급 실적 역시 수출업체는 증가하고 있으나 환급 업체 수는 감소하여 수출업체의 관세환급의 활용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줌
 - 이에 따라 수출업체 중 환급업체의 비중은 2015년 18.4%에서 14.2%로 줄었으며, 수출금액 1달러당 환급금액 또한 7.66원에서 6.43원으로 감소하였음

- 이러한 관세환급 실적과 활용률의 저조 현상은 특히 간이정액환급과 중소기업에서 두드러짐
 - 관세환급 실적이 최대였던 2012년 대비 2020년 간이정액환급 금액은 약 62% 감소한 반면, 소요량환급 금액은 약 50.8% 적어졌음
 - 전반적으로 환급금액이 감소하고 있지만, 간이정액환급의 감소율이 더 큼
 - 또한 중소수출기업 중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는 업체의 비율은 2019년 기준 9.1%로, 대·중견기업의 업체 수 대비 개별환급 업체 수 182%에 비해 매우 낮음
 - 이러한 비중은 개별환급을 받는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수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하는 지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활용률은 절대적으로도 낮은 수준임

- 중소기업이 개별환급을 적용받는 경우를 고려한다고 해도 최대 활용률은 15%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제IV장에서는 중소기업의 환급 활용률이 낮은 이유를 관세환급제도를 적용하는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토대로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즉 중소기업의 관세환급제도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1. 중소기업의 관세환급제도 적용상 문제점

가. 납세협력비용의 부담

- 관세환급제도는 수입자가 우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고, 이를 수출에 제공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납부 관세를 제도임
- 따라서 관세환급을 위해서는 ①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② 수입물품이 환급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함
- 수입자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은 수입신고부터 환급신청까지의 기간 동안 납부한 관세에 대한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수입자가 직접 생산물품 또는 수입물품을 수출하지 않는 경우 또한 양수인에게 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양도하므로, 이러한 금융 비용의 부담은 거래단계를 거쳐 전가되게 됨
- 우리나라의 수출이행 기간은 대략 수입 후 2년이며, 수출 후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하므로 최대 약 4년간 이러한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이뿐만 아니라 수입원재료를 수입 후 1년 이내에 제조·가공하여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당해 기간은 수출이행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추가로 늘어날 수 있음
 - 제조·가공 후 국내 거래된 수입원재료를 전 단계 거래 이후 1년 이내에 또 다시 제조·가공하여 국내 거래하는 경우도 수출이행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거래 당사자가 부담하는 금융 비용은 계속하여 증가할 수 있음

- 이러한 금융 비용은 우리나라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사전면세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므로, 일종의 납세협력비용으로 볼 수 있음
 - 만약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면세와 환급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경우 납세자가 면세를 선택한다면 이러한 금융 비용은 발생하지 않게 됨

- 한편 관세환급을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하여 환급신청인은 수입물품이 얼마나 어떤 물품에 사용됐는지 소요량을 산정하고, 생산된 물품에 사용된 수입물품에 납부된 관세가 얼마인지 추적해야 함
 - 우리나라는 이러한 소요량 산정과 납부세액 증명을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환급에는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됨

- 이러한 소요량 산정과 납부세액 증명 작업, 즉 관세환급금액 산출 과정은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때에 서류로 증명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세관에 제출해야 함
 - 세관장의 서류제출 대상 통지를 받은 환급신청인은 수출확인서류와 다음의 서류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함¹⁶⁷⁾
 - 소요량 계산서
 -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 확인서류
 - 환급금 계산내역표
 - 자재명세서

167)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 또한 환급심사하는 과정에서 소요량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소요량 산정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¹⁶⁸⁾
 - 품목별·소요원재료별 단위소요량 및 변동명세서
 - 수출물품의 단위실량 확인자료
 - 제조사양서 및 제조공정도
 - 원재료수불대장, 제품수불부, 생산일보
 - 제품별 원가계산서 등

- 또한 관세환급에 관한 서류는 환급신청일부터 5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이러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¹⁶⁹⁾
 - 보관해야 할 서류와 그 기간은 다음과 같음¹⁷⁰⁾
 - 수출물품별 원재료의 소요량계산 근거서류 및 계산내역에 대한 서류는 환급신청일부터 5년
 - 내국신용장 등 수출용 원재료 거래관계서류는 당해 물품의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일부터 3년
 -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환급신청일부터 3년
 - 수입신고필증 등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환급신청일부터 3년
 -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는 환급신청 등에 사용한 날부터 3년

- 이와 같이 관세환급과 관련된 물품의 수출자, 수입자, 공급자 등은 관련 서류를 구비·보관 또는 제출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이러한 협력의무를 부담하기가 어려움
 - 중소기업은 수출입 물품의 반출·입, 생산, 거래 등의 내역을 기록·보관·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인력이 없거나 부족함
 - 또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기록이나 장부 등은 작성·관리한다 하더라도

168)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7조

169)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70)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조

도, 이를 관세환급을 위한 증빙으로 재작성하거나 편집하는 데에도 추가적인 시간·인력·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음

-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이 관세환급을 받는 금액보다 크거나 비슷한 경우 관세환급 적용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많은 중소기업이 관세환급을 포기하게 됨
-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관세환급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간이정액환급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의 활용률도 낮은 실정임

나. 규정의 복잡화

- 관세환급은 수출국에서 부과된 관세가 수입국에서 또다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환급금액은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관세환급제도는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무역거래의 다양화, FTA의 확산 등에 따라 빈번해진 물품가격·관세율의 변동으로 과다환급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복잡해지고 있음
- 완제품 수출 시 이전 2년간 수입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중에서 선택하여 환급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단가나 관세율이 높아 납부세액이 많은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함에 따라 과다환급이 발생할 수 있음¹⁷¹⁾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을 제한함
- 수출물품 생산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고, 다세율 수입원재료의 수입물

171) 관세청,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해설』, 2016, p. 5

량, 환급 추이 등을 분석하여 제한대상 물품을 제정·조정하고 있음¹⁷²⁾

- 이와 같은 환급방법 조정 규정 중 환급사용물량을 제한하는 경우는 FTA가 확대됨에 따라 다세율 원재료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품목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¹⁷³⁾
 - 2013년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할 당시 12개였던 품목이 2020년 107개의 품목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 그러나 환급사용물량 제한 품목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 제한 품목을 환급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인이 전년도 수입물량을 파악하여 수입물량 비중과 이에 따른 환급사용물량을 계산해야 함

-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¹⁷⁴⁾
 - 다음 사례에서 2019년 원재료의 총수입물량은 95톤이지만, 환급사용물량을 안분하는 수입물량에는 기납증 또는 분증 공급물량을 제외하므로 총 80톤이 수입물량이 됨
 -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에 따른 비중은 다음과 같음
 - 세율 5.5% 수입물량 비중: 30톤 ÷ 80톤 = 38%¹⁷⁵⁾
 - 세율 1.8% 수입물량 비중: 40톤 ÷ 80톤 = 50%
 - 세율 2.1% 수입물량 비중: 10톤 ÷ 80톤 = 12%
 - 수출제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환급물량은 40톤으로, 이를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172) 관세청(2016), p. 5

173) 관세청(2016), p. 7

174) 관세청(2016), pp. 41~42

175) $30/80=37.5$ 이지만 소수점 이하를 절사한 후 비중의 합계가 100이 되도록 고세율부터 1%씩 가산함에 따라 세율 5.5% 수입물량 비중은 38%가 됨

- 세율 5.5% 환급사용물량: 40톤 × 38% = 14.8톤
- 세율 1.8% 환급사용물량: 40톤 × 50% = 20톤
- 세율 2.1% 환급사용물량: 40톤 × 12% = 4.8톤

[그림 IV-1] 환급사용물량 제한 품목 안분계산 사례

(단위: %, 톤, 원)

• 수입물품 및 내역: 2-에틸헥실알콜(2905.16-1000)

수입(공급)일자	세율	물량	단가	단위당 세액	납부세액
2019. 4. 15.	WCO 5.5	20	760	41.8	836
2019. 8. 11.	FEU1 1.8	20	700	12.6	252
2019. 9. 29.	WCO 5.5	10	800	44	440
2019. 10. 6.	기납증	15	800	16	240
2019. 11. 3.	FIN 2.1	10	600	12.6	126
2019. 12. 24	FEU1 1.8	20	800	14.4	288

• 수출물품 및 내역: 오르토프탈산디2에틸헥실 80톤 2020. 8. 10.

• 소요량: 제품 2톤에 소요되는 원재료는 1톤

자료: 관세청(2016), p. 41를 바탕으로 저자 수정

- 이와 같은 환급사용물량 산출과정은 시스템이나 인력, 비용이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하여 해당 품목의 관세환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함
 - 원재료의 전년도 수입물량을 장부 등으로 관리한다고 해도 이를 세율별로 집계하고, 그 비중으로 환급사용물량을 산출하는 데 별도의 인력, 비용, 시간 등이 필요하기 때문임
- 이에 따라 2019년 8월 1일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중소기업을 환급 제한 배제 대상으로 추가하였음
 - 따라서 중소기업이 환급 등을 신청하는 경우 관할지 세관장에게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여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 신청을 할 수 있음¹⁷⁶⁾

176)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제10조

-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 사유서
-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그러나 환급사용물량 제한 규정은 중소기업 외의 업체에도 지나치게 복잡하여 환급을 포기하기도 하며, 이러한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중소기업 또한 환급을 활용하지 못하게 됨
 - 중소기업이 물량제한 대상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로부터 기납증 등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적용 제한 배제 대상이 아닌 공급자가 기납증 등을 발급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이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한편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 공급하는 경우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하는 때에 환급사용물량을 안분하도록 함에 따라 국내 공급물량에 대한 물량 제한의 효과가 왜곡되기도 함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의 적용 범위상 환급 등에 관세 등의 환급과 기납증 등의 발급이 포함됨
 - 따라서 국내 공급물량은 환급을 신청하는 때가 아니라 기납증 등을 발급하는 때에 세율 비중에 따라 물량계산을 함

- 첫째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국내 공급도 받는 경우 국내 공급물량은 환급사용물량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환급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불분명함
 - 수입과 국내 공급이 모두 이루어지는 경우 환급사용물량을 조정하는 규정이 명시되지 않아 수입물량만이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안분되어 환급에 사용될 수 있음

- 다음의 수입물품과 국내 공급물품의 환급사용물량 조정 사례를 살펴보면 국내 공급물량을 환급에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다음의 사례를 보면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의 시행

전에 기납증 공급물량인 15톤이 환급에 사용되었음

- 그러나 동 고시의 시행 후에는 환급사용물량을 산출할 수 있는 전년도 수입물량 비중이 없기 때문에 기납증 공급물량은 환급에 사용할 수 없게 됨
 - 환급물량 40톤 중 38%는 5.5% 세율 적용물품, 50%는 1.8% 세율 적용물품, 12%는 2.1% 세율 적용물품으로 사용되고, 기납증 공급물품은 사용되지 않음

〈표 IV-1〉 환급사용물량 제한 품목 수입신고필증 사용 사례

(단위: %, 원, 톤)

조정고시 시행 전					조정고시 시행 후				
일자	세율	단위당세액	물량	환급세액	일자	세율	단위당세액	물량	환급세액
19.10.6	기납증	16	10	160	19.9.29	5.5	44	10	440
19.9.29	5.5	44	10	440	19.4.15	5.5	41.8	4.8	200
19.4.15	5.5	41.8	20	836	19.12.24	1.8	14.4	20	288
					19.8.11	1.8	12.6	0.4	5
					19.11.3	2.1	12.6	4.8	60
합계			40	1,436	합계			40	993

자료: 관세청(2016), p. 43을 바탕으로 저자 수정

- 이와 관련하여 관세청은 기납증 또는 분증 물량을 수입물량에 우선하여 환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함¹⁷⁷⁾
 - 이를 상기의 사례에 적용하여 기납증 물량 15톤을 우선 사용하여 환급하는 경우 수입물량은 25톤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세율별로 안분됨
 - 세율 5.5% 환급사용물량: 25톤 × 38% = 9.5톤
 - 세율 1.8% 환급사용물량: 25톤 × 50% = 12.5톤
 - 세율 2.1% 환급사용물량: 25톤 × 12% = 3톤

177) 관세청, 『개정 환급방법조정고시 Q&A』, 2019. 8, p. 35

〈표 IV-2〉 환급사용물량 제한 품목 기납증 우선 사용 사례

(단위: %, 원, 톤)

수입신고필증 사용					기납증 우선 사용				
일자	세율	단위당세액	물량	환급세액	일자	세율	단위당세액	물량	환급세액
19.9.29	5.5	44	10	440	19.10.6	기납증	16	15	240
19.4.15	5.5	41.8	4.8	200	19.9.29	5.5	44	9.5	418
19.12.24	1.8	14.4	20	288	19.12.24	1.8	14.4	12.5	180
19.8.11	1.8	12.6	0.4	5	19.11.3	2.1	12.6	3	38
19.11.3	2.1	12.6	4.8	60					
합계			40	993	합계			40	876

자료: 관세청(2016), p. 43을 바탕으로 저자 수정

- 그러나 국내 공급물량과 수입물량의 사용 우선순위를 환급신청인이 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환급액이 많은 경우를 선택하기 위해 더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함
 - 상기의 사례를 보면 수입물량만을 사용한 경우 993원이 환급되나 기납증을 우선 사용한 경우 876원이 환급됨
 - 따라서 환급신청인은 수입물량만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선택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가 가장 환급액이 많은지 계산을 해야 함
 - 즉 ① 수입물량만 사용 ② 기납증 일부 우선 사용 ③ 기납증 전부 우선 사용의 경우에 대한 각각의 환급액을 산출하여 이를 비교하여야 함

- 이와 같이 국내 공급물량과 수입물량이 같이 있는 경우 환급사용물량 산출이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국내 공급물량에 대한 환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한 업체는 환급사용물량 산출에 따른 협력비용은 부담하였는데, 실제 이에 대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결과가 됨

- 다음으로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하는 때에 환급사용물량을 안분계산하도록 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 공급하거나 받는 경우,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의 효과가 중소기업이 아닌 거래상대방에게 나타날 수 있음

- 우선 중소기업이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 공급하는 경우 환급사용물량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높은 세율의 수입신고필증을 선택하여 기납증 등을 발급할 수 있음
 - 이 경우 중소기업의 환급사용물량 산출이라는 업무부담은 줄었지만, 이로 인해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효과는 공급받는 자가 누리게 됨
 - 반대로 중소기업이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 공급받는 경우 기납증 등이 이미 환급사용물량으로 안분되어 발급되었으므로 수출중소기업은 높은 세율을 적용받은 수출용 원재료를 먼저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됨
- 즉 다음의 사례와 같이 중소기업이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 공급하는 때에 공급자가 받는 환급금액이 더 많아지고, 국내 공급받는 경우 중소기업의 환급금액이 적어짐
- 중소기업이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는 때에는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를 받기 때문에 총 1,436원의 세액을 기납증으로 양도할 수 있음
 - 반면 중소기업이 공급을 받는 경우 환급사용물량 제한에 따라 안분된 기납증을 발급받으므로 총 933원의 세액을 양도받아 환급에 사용할 수 있음

〈표 IV-3〉 환급사용물량 제한 품목 국내공급 사례

(단위: %, 원, 톤)

중소기업이 공급하는 때					중소기업이 공급받는 때				
일자	세율	단위당세액	물량	기납증 발급세액	일자	세율	단위당세액	물량	기납증 발급세액
19.10.6	기납증	16	10	160	19.9.29	5.5	44	10	440
19.9.29	5.5	44	10	440	19.4.15	5.5	41.8	4.8	200
19.4.15	5.5	41.8	20	836	19.12.24	1.8	14.4	20	288
					19.8.11	1.8	12.6	0.4	5
					19.11.3	2.1	12.6	4.8	60
합계			40	1,436	합계			40	993

자료: 관세청(2016), p. 43을 바탕으로 저자 수정

- 이와 같이 환급방법의 조정과 같이 관세환급 규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중소기업의 환급 적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환급 활용이 저해될 수 있음
 - 납세협력비용 부담 부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이 환급을 보다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간이정액환급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다. 간이정액환급의 과소환급

-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적용의 부담과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한 간이정액환급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관세청장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수출물품별로 정액환급률표를 정하여 고시함¹⁷⁸⁾

- 간이정액환급은 환급률표에 정해진 금액을 환급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실제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때 납부한 관세 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함
 - 간이정액환급은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함에 따라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개별환급에 비해 환급액을 적게 산출하여 정해지는 경향이 있음
 - 2019년 기준 중소기업의 수출금액 1달러당 간이정액환급액은 1.143달러로 이는 모든 수출기업의 수출금액 1달러당 환급액인 6.431달러의 약 18% 수준임
 - 또한 이 금액은 대·중견기업의 수출금액 1달러당 환급금액인 7.726달러의 약 15%로 간이정액환급액이 개별환급액보다 적음
 - 이는 중소기업의 간이정액환급 활용률이 낮다는 점도 영향이 있지만, 간이정액 환급액이 개별환급액보다 적다는 것을 보여줌

- 또한 간이정액환급률표상 수출물품별 환급금액이 부정확하게 산출됨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의 과소환급이 유발되기도 함

17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간이정액환급금액은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을 기초로 정해지기 때문에 어느 한 품목의 환급금액의 오류는 다른 품목의 환급금액에 영향을 미침
- 실제로 간이정액환급률표에서 기타로 분류되는 소호의 환급금액이 같은 호의 특계 소호의 환급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기타 소호의 환급금액의 과다하게 산출되었기 때문일 수 있음
 - 다음의 예시를 보면, 비금속제의 장착구·부착구가 분류되는 제8302호의 경우, 특계된 경첩, 카스터 등에 비해 기타 품목의 환급액이 100원 더 많음
 - 또한 권선용 전선이 분류되는 제8544.1호도 구리로 만든 제8544.11호와 기타의 제8544.19호 간 환급액은 130원이 차이 남

[그림 IV-2] 간이정액환급률표 특계호 및 기타호 환급금액 차이 예시

HSK	세번명	수출금액(FOB) 1만원당 환급액
8302.10-0000	경첩	10
8302.20-0000	카스터(castor)	10
8302.30-000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10
8302.41-1000	문·창에 적합한 것	10
8302.49-9000	기타	110
8544.11-1000	절연도료 피복전선	10
8544.11-9000	기타	10
8544.19-0000	기타	140

자료: 「간이정액환급률표」

- 이는 기타호의 ① 수출·환급이 실제로 많아 환급액이 높게 책정되었거나 ② 수출 시 품목분류가 부정확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일 수 있음
 - 어떤 이유로 특계호와 기타호의 환급금액의 차이가 발생했는지 중소기업이 특계 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과소환급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다른 호와 환급액의 차이가 많은 기타호에 따른 환급을 신청하기 부담되어 환급액이 적은 다른 호로 분류하여 환급을 신청하기도 함
 - 납세행정에 대한 대응 능력이 낮은 중소기업은 관세환급에 있어서도 사후 심사나 추징의 위험이 적은 보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
 - 기타호로의 품목분류와 환급신청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추후 심사나 자료 제출과 같은 관세당국의 요청에 대한 대응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임

- 또한 기타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수출·환급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다른 호의 환급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과소환급이 발생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제8544호의 권선용 전선이 구리로 만들어졌으나 성분을 확인하지 않고 그 외의 재료로 만들어진 전선이 분류되는 제8544.19호로 수출 및 환급된 경우가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음
 - 이 경우 환급액은 제8544.19호의 평균환급액 산출에 합산되고, 제8544.11호의 평균환급액에서는 차감되므로 제8544.11호의 환급액이 실제보다 적게 산출됨

- 이와 같이 간이정액환급은 환급절차를 단순화한 제도라는 태생적 한계와 납세자의 불성실한 납세협력의무 이행 등으로 인해 과소환급이 발생하고 있음
 - 그러나 간이정액환급은 실제 원재료의 관세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수출만 확인되면 허용되는 일종의 혜택이므로, 그 개선을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2. 중소기업체 활용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가. 납세협력비용의 전가

- 중소기업이 부담해야하는 환급 관련 납세협력비용 완화를 위해 관세당국이나 다른 수출입 물품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이를 전가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 관세환급으로 관세당국과 납세자와의 관세채권 관계가 성립하므로 관세의 반환이라는 급부를 얻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함
 - 따라서 중소기업의 납세협력의무를 제거하는 것은 어렵고, 이를 다른 이해당사자에게 전가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함
- 우선 중소기업에게 관세환급 대신 사전면세를 허용하여 환급에 따른 금융 비용과 기타 납세협력비용을 관세당국으로 전가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1975년 관세환급제도를 도입한 이후 사전면세제도를 폐지하였지만, 일본, 캐나다, 호주의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사전면세를 시행하고 있음
 - 다만 사전면세제도는 관세환급제도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금융 비용 부담은 줄지만 관세당국의 사후관리에 따른 행정비용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음
 - 관세부과 및 환급이라는 절차에 따른 관세당국의 행정비용은 절감되지만, 면세를 받고 수입된 원재료가 수출 등에 제공되었는지 사후관리가 필요함
 - 또한 납세자도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구비 등의 협력을 이행해야 함
 - 또한 중소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을 상위 거래단계의 당사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수입자에게 환급청구권을 양도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제조자 또는 수출자에게만 환급청구권이 있으나 미국, 캐나다는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부터 수출까지의 과정의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환급을 허용하고 있음
 - 중소기업인 수입자에게 환급을 허용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기납증·분증과 같은 양도세액 증명서의 발급이 필요 없으므로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수 있음
 - 수입자는 수출용 원재료의 관세 납세의무자이므로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 없으며, 수출자 등에게 수출용 원재료를 공급하였다는 증명만 있으면 환급이 가능함

- 그러나 사전면세제도와 수입자의 관세환급 허용은 기존의 환급절차·요건 등의 전면적인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행이 어려울 수 있음
 - 사전면세의 경우 감면신청, 사후관리 등의 절차와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고, 수입자의 관세환급 신청은 제조자 등의 요건 확인 절차와 증빙이 요구됨
 - 또한 직접적인 관세 혜택이 없는 제조자나 수출자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이를 유도 또는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도 필요함

- 수입원재료가 국내에서 여러단계에 거쳐 거래되는 경우 수입자가 아닌 제조자·수출자 등이 원재료의 수출이행 확인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음
 - 이 경우 면세 또는 환급이라는 혜택을 직접 받지 않는 수출자 등의 이해당사자가 그 반대급부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유인이 필요함

- 면세 또는 수입자 환급 원재료의 국내거래 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 거래가격에서 제외되므로 수입자가 아닌 당사자도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할 유인이 있음
 - 즉 제조자, 수출자 등도 기존의 환급제도에서보다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협력의무를 이행할 동기가 발생함
 - 다만 제조자 등의 협조를 강제하기 위하여 면세 또는 환급신청 시 제조자 등이 면세 또는 환급 요건을 이행하겠다고 명시한 구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함

- 또한 수입자와 수출자·제조자 등과 같은 이해당사자의 납세협력의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면세 또는 환급 요건 충족에 관한 증빙을 사업상 사용하는 기록이나 장부로 대체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관세환급에서도 기존에 거래관계 등의 증명서를 별도로 구비하도록 했던 규정을 사업상 일반적으로 필요한 기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수입자의 경우 수입신고필증으로 납부세액을 증빙하고,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조자 등과의 거래를 증빙할 수 있음

- 제조자는 구매원장, 생산일지, 수불부 등으로 수출용 원재료의 사용을, 수출자는 수출신고필증으로 수출을 증빙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사전면세나 수입자의 환급 허용은 요건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나 비용이 발생하므로, 도입을 위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거래구조, 원재료의 수입 비중 등이 다르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절차의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적용대상을 관세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거나 적용품목을 중소기업이 주로 수입·공급하는 물품으로 제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대상·품목을 제한하여 시행한 후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때 그 대상·품목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나. 규정 및 제도의 정비

- 관세환급 제도와 규정은 국제 무역환경, 여러 당사자의 이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정책이므로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활용만을 위하여 수정·변경하기가 쉽지 않음
 - 예를 들어 과다환급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용 원재료의 환급사용물량 제한 규정의 경우 중소기업이 적용하기에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여 폐지할 수는 없음
 - 이는 FTA에 따른 다세율 물품의 증가로 인한 과다환급의 우려 때문에 시행하는 규정으로 이를 폐지한다면 과다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한 수출 지원에 해당하여 통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또한 간이정액환급의 경우 중소기업에 실제 수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이므로, 이 금액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함
 - 간이정액환급액의 규모가 커지면 보조금협정상 인정되지 않는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되어 상계관세의 대상이 되는 등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활용을 저해하는 규정이나 제도를 수정·변경하기보다 미비한 부분들 보완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하여 관세환급 적용에 편의를 주거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활용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1) 환급사용물량 제한 규정 보완

- 먼저 환급사용물량 제한에서 국내 공급물량과 수입물량 간의 조정을 환급신청인이 선택하도록 하여 기납증·분증의 사용을 더욱 복잡하게 한 규정을 보완해야 함
 - 이 규정이 보완된다면 수출자가 직접 물량제한 대상물품을 수입하면서 동시에 국내에서 공급받는 경우도 수입물량만 환급에 사용하는 수준의 절차만 이행하면 국내 공급물량도 환급에 사용할 수 있음

- 우선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 공급받는 경우 환급사용물량을 기납증 또는 분증을 발급할 때가 아닌 환급을 신청하는 때에 세율별 물량 비중으로 안분하도록 개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음
 - 즉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안분하고, 환급사용물량을 산출하는 산식의 수입물량과 환급물량에 기납증 등을 통해 공급받은 물량을 포함하는 것임

-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경우 환급사용물량 제한 품목의 안분사례에서 기존 기납증 발급 물량에 대한 단위당 세액과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변경됨
 - 기존 단위당 세액이 16원, 납부세액 240원으로 발급된 기납증은 공급하는 자의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안분된 것임
 - 따라서 규정이 개정된다면 이를 안분하지 않고 적용받은 세율별로 발급해야 함

[그림 IV-3] 규정 개정 후 환급사용물량 제한 품목 안분계산 사례

(단위: %, 톤, 원)

• 수입물품 및 내역: 2-에틸헥실알콜(2905.16-1000)

수입(공급)일자	세율	물량	단가	단위당 세액	납부세액	
2019. 4. 15.	WCO 5.5	20	760	41.8	836	
2019. 8. 11.	FEU1 1.8	20	700	12.6	252	
2019. 9. 29.	WCO 5.5	10	800	44	440	
2019. 10. 6.	기납증	2.1	10	800	16.8	168
		1.8	5	800	14.4	72
2019. 11. 3.	FIN 2.1	10	600	12.6	126	
2019. 12. 24	FEU1 1.8	20	800	14.4	288	

• 수출물품 및 내역: 오르토프탈산디에틸헥실 80톤 2020. 8. 10.

• 소요량: 제품 2톤에 소요되는 원재료는 1톤

자료: 관세청(2016), p. 41을 바탕으로 저자 수정

□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경우 환급사용물량 제한 품목의 안분사례는 다음과 같이 변경됨

- 다음 사례에서 2019년 원재료의 총수입물량은 기납증으로 공급받은 물량 15톤을 포함하여 95톤임
- 국내 공급받은 물량을 포함하여 계산된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에 따른 비중은 다음과 같음
 - 세율 5.5% 수입물량비중: 30톤 ÷ 95톤 = 32%
 - 세율 1.8% 수입물량비중: 45톤 ÷ 95톤 = 47%
 - 세율 2.1% 수입물량비중: 20톤 ÷ 95톤 = 21%
- 수출제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환급물량은 40톤으로, 이를 세율별 환급사용물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음
 - 세율 5.5% 환급사용물량: 40톤 × 32% = 12.8톤
 - 세율 1.8% 환급사용물량: 40톤 × 47% = 18.8톤
 - 세율 2.1% 환급사용물량: 40톤 × 21% = 8.4톤
- 이에 따른 환급은 <표 IV-4>와 같이 신청할 수 있음

〈표 IV-4〉 규정 개정 후 환급사용물량 제한 품목 수입신고필증 사용 사례(1)

(단위: %, 톤, 원)

규정 개정 전					규정 개정 후				
일자	세율	단위당세액	물량	환급세액	일자	세율	단위당세액	물량	환급세액
19.9.29.	5.5	44	10	440	19.9.29.	5.5	44	10	440
19.4.15.	5.5	41.8	4.8	200	19.4.15.	5.5	41.8	2.8	117
19.12.24.	1.8	14.4	20	288	19.12.24.	1.8	14.4	18.8	271
19.8.11.	1.8	12.6	0.4	5	19.10.6. (기납증)	2.1	16.8	8.4	141
19.11.3.	2.1	12.6	4.8	60					
합계			40	993	합계			40	969

자료: 관세청(2016), p. 4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이렇게 개정된다면, 중소기업이 환급사용물량 적용 품목을 국내 공급받는 경우 적용 배제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개선될 수 있음
 - 즉 공급받는 자가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안분하여 기납증을 발급하지 않고, 높은 세율을 적용받은 물량을 기납증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당초 기납증 또는 분증의 발급을 환급 등으로 포함하는 규정, 중소기업의 환급사용물량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의 취지를 보았을 때 이와 같은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우선 기납증을 발급한 국내 공급자가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 소비하는 경우 세율이 높은 물량을 선택하여 기납증으로 발급할 수 있으므로, 과다환급의 우려가 있음
 - 또한 중소기업의 환급사용물량 적용 배제는 중소기업에 환급사용물량 안분이라는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지, 중소기업에 높은 세액을 환급에 사용하도록 혜택을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님

- 따라서 환급물량을 수입환급물량과 국내환급물량으로 안분한 후, 수입환급물량을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사용물량으로 안분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국내공급물량은 이미 기납증·분증 발급 시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으로 안 분되었으므로 국내환급물량만큼 기납증 등을 환급에 사용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규정을 개정하게 되면 환급사용물량 제한 물품의 환급사용 사례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게 됨
 - 총환급물량 40톤은 다음과 같이 수입환급물량, 국내환급물량으로 안분됨
 - 수입환급물량: 40톤 × (80톤/95톤) = 33.7톤
 - 국내환급물량: 40톤 × (15톤/95톤) = 6.3톤
 - 국내환급물량인 4.4톤은 기납증으로 환급에 사용하고, 수입환급물량은 전년도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분됨
 - 세율 5.5% 환급사용물량: 33.7톤 × 38% = 12.9톤
 - 세율 1.8% 환급사용물량: 33.7톤 × 50% = 16.8톤
 - 세율 2.1% 환급사용물량: 33.7톤 × 12% = 4톤
 - 이에 따른 환급은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음

〈표 IV-5〉 규정 개정 후 환급사용물량 제한 품목 수입신고필증 사용 사례(2)

(단위: %, 톤, 원)

규정 개정 전					규정 개정 후				
일자	세율	단위당세액	물량	환급세액	일자	세율	단위당세액	물량	환급세액
19.9.29.	5.5	44	10	440	19.9.29.	5.5	44	10	440
19.4.15.	5.5	41.8	4.8	200	19.4.15.	5.5	41.8	2.9	121
19.12.24.	1.8	14.4	20	288	19.12.24.	1.8	14.4	16.8	242
19.8.11.	1.8	12.6	0.4	5	19.11.3.	2.1	12.6	4	50
19.11.3.	2.1	12.6	4.8	60	19.10.6.	기납증	16	6.3	101
합계			40	993	합계			40	954

자료: 관세청(2016), p. 4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간이정액환급제도 정비

- 간이정액환급제도에서의 동일한 호 내에서 기타소호와 다른 소호의 환급금액의 차이는 그 편차가 발생한 원인에 따라 보완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 차이 발생원인은 기타소호로 분류되는 물품의 수출·환급이 많거나 기타소호로의 품목분류가 부정확한 경우가 있음

- 우선 기타소호의 수출·환급이 많은 경우라면 당해 소호의 세분화를 통해 보다 정확한 간이정액환급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나라는 HS 10단위의 품목분류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제 통일단위인 6단위 미만의 소호는 각 국가별로 세분화할 수 있음
 - 따라서 기타로 분류되는 수출·환급이 많은 품목을 특개하고 당해 품목에 대한 정확한 환급금액을 산출하여 기타소호와 다른 소호의 편차를 줄여야 함

- 품목분류표는 관세환급뿐 아니라 관세율, 수출입요건, 통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관세환급만을 위한 세분화가 어렵다면, 간이정액환급률표에 하위 분류를 마련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FTA 협정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관세양허표에 10단위 소호의 하위에 세분화한 품목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간이정액환급률표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다음으로 부정확한 품목분류로 인해 기타소호의 간이정액환급금액이 높아진 경우 정확한 품목분류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올바른 품목분류를 통하여 기타소호의 수출·환급으로 집계됐던 실적이 다른 소호로 이동하면서 정확한 환급금액 산출이 가능해짐

- 따라서 관세당국이 관세환급금액이 다른 소호보다 높은 기타소호에 분류되는 물품을 수출하여 개별환급받는 업체의 품목분류를 검토·안내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수출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개별환급의 경우 수출물품의 품목분류가 환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수출자가 품목분류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관세당국이 정확한 품목분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안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관세법」의 개정으로 물품의 수출입자뿐 아니라 수출물품의 제조자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 함
 - 수출자뿐 아니라 제조자가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해 정확한 품목번호로 수출신고를 하거나 기납증을 발급할 수 있음
 - 또한 간이정액환급액의 산출 근거가 되는 수출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뿐 아니라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는 수출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안내도 필요함
 - 중소기업의 경우 환급금액이 높은 소호로의 품목분류로 인하여 심사 등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부담되어 환급을 보수적으로 적용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이 추후 심사에 따른 추징의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정확한 품목분류를 안내받을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음
 - 중소기업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협력비용이 부담될 수 있음
 - 그러므로 중소기업에게 동일한 품명의 품목분류 사례나 수출신고 실적을 안내하는 등 관세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

다. 관세당국의 협력

- 최근 관세청은 관세행정 업무의 운영을 조사·추진·징수가 아닌 성실신고·사전예방에 중점을 두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¹⁷⁹⁾

- 즉 관세행정의 운영방향을 납세협력·성실납세 지원으로 전환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고 오류를 예방·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 중 하나로 관세청은 2019년 4월부터 ‘납세도움정보 서비스’를 도입하여 수입기업에 제공하고 있음¹⁷⁹⁾
 - 납세도움정보 서비스란 맞춤형 도움정보를 제공하여 기업이 납세오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 이는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세적자료, 외환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진단한 해당 기업의 납세오류 가능성을 바탕으로 제공됨
- 기업에 제공되는 납세도움정보에는 관세환급실적, HS별·연도별 환급률 추이, 수출 후 관세환급을 받지 않은 현황 등과 같이 관세환급 관련 사항도 포함됨¹⁸¹⁾
 - 이를 통하여 해당 기업은 관세환급 현황을 파악하고, 관세환급을 받지 않은 물품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관세청이 수출입기업에 납세 관련 사항의 사전안내, 자료제공 등의 적극행정에 힘쓰고 있는바, 관세환급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제공도 필요함
 - 관세환급과 관련된 복잡한 규정을 보다 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관련 자료를 미리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방안의 마련을 고려할 수 있음
- 우선 중소기업이 관세환급에 있어 가장 어려움을 겪는 소요량 산정과 관련하여 표준소요량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소요량 계산업무의 간소화 등을 위해 표준소요량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

179)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3080&nttSn=52540>, 검색일자: 2021. 2. 26.

180) 관세청, 「‘납세도움정보’ 받아 보고, 신고오류 예방 하세요」, 보도자료, 2019. 4. 17.

181) 관세청(2019. 4. 17)

재 고시된 물품은 없음

- 제조공정이 정형화되어 투입되는 원재료의 소요량의 변경이 거의 없고, 중소기업이 주로 생산 및 수출하는 물품에 대한 표준소요량 제도의 활용이 필요함
- 또는 2017년 동법의 개정으로 소요량 산정에 대한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해당 심사결과를 신청인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미국의 경우 일반제조환급 결정사항을 CFR 부록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당해 결정을 적용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음
 - 우리나라도 소요량 사전심사의 결과를 공개해도 무방한 경우, 이를 고시함으로써 중소기업 등 소요량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 밖에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대상 물품에 대한 환급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을 관세청이 납세도움정보 서비스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는 방법도 도입할 수 있음
 - 현재 세율별 수입물량 비중은 환급 등을 신청하기 전 환급 등을 신청하려는 자가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함
 - 중소기업의 경우 전년도 수입실적을 취합하고, 그 비중을 계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관세청이 미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관세청의 관세환급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관세환급 활용이 확대될 수 있음
 - 또한 관세청의 납세자 친화적 관세행정 업무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활용할 필요가 있음

참고문헌

- 관세청,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해설』, 2016.
- _____, 「18년 국정과제 관련 주요정책과제 추진 실적 2」, 2018. 12.
- _____, 「‘납세도움정보’ 받아 보고, 신고오류 예방 하세요」, 보도자료, 2019. 4. 17.
- _____, 「개정 환급방법조정고시 Q&A」, 2019. 8.
- _____, 「2019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 보도자료, 2020. 12. 18.
-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7.
- 정재완, 『관세환급특례법』, 도서출판 두남, 2000.
- 정재호·강성훈, 『FTA 확산에 따른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 정재호·이명현, 『관세환급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01. 12.
- 관세청, <https://www.customs.go.kr>
- 관세청 관세용어사전, <https://www.customs.go.kr/kcs/ad/tr/trTermView.do?mi=2902&s=&termId=2350>
- 관세청 블로그, 「중소 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 2019. 7. 5,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578491074
- 호주 국경수비대, <https://www.abf.gov.au>
- 호주 business.gov.au, <https://www.business.gov.au>

관세연구 20-05

관세환급제도의 중소기업 활용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발 행 2020년 12월 31일

저 자 정재호 · 이재선

발행인 김유찬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및
인쇄 거목정보산업(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ISBN 979-11-6655-046-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